

다.

지난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막상 일정이 시작되니까 3명만이 결합했다. 경찰과 시민들의 협조(지나가는 자가용에서 박수받음)와 도로 사정상 무난한 순례를 할 수 있었다. 지역거점 서명은 없었다. 활동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지역 쪽이 오지라는 느낌과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활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지역분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지역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쪽 지역보다 동쪽 지역 상황을 중앙에서 더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9월 7일

6시 50분 기상

8시 식사(김학은-천정연 회원)

: 노진민, 이현정, 정승기, 박성태, 이용건, 김기연, 이정미, 상주가대연, 상주천정연

8시 30분~10시 모동면 모동공소

: 한상봉님 만남

10시 40분 상주로 출발, 방향 전환

12시 50분 식사 및 속리산 순례

3시 30분 계림동 성당 도착

: 약 30-40명

4시~6시 거리도보행진, 서명, 중간거점 거점 서명, 선전

6시 30분~8시 미사

: 집전-신대원(계림동성당), 우병현(남성동성당), 신길용(옥선성당), 회승근(안동정평위원장), 신자 100명

◆활동상황◆

일정이 오후부터 있어서 오전에 모동공소에 들러 한상봉 형제님 만났다. 오후에 상주 시내 거리가 좁아 도보로 행진하며 선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저녁 미사때 단장님 강론("회년의 참의미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부터")이 있

었다. 평소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했다 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에 맞는 활동이었다. 상주 시내가 그리 크지 않아 자전거로 했으면 30분도 걸리지 않았을 듯 하다. 또한 자전거가 워낙 생활이 되어 있어 자전거 순례로는 시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을 듯 하다.

거의 40분 이상의 어른들과 함께 한 도보행진은 왠지 무게감과 신뢰감이 더 느껴졌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하게 시작하여 흡사 침묵시위를 하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1:1 서명에 들어가 비교적 잘 되었다. 시민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차갑거나 무관심하지 않았다. 걱정했던 것 보다 경향도 지역의 서명이 무난히 진행되었다. 서명전 중간 시장에 들어서기 전에 상주가대연 학생들이 피켓팅과 스피치 등 거점 서명과 하고 있어서 약 20분간 함께 하다가 계속 진행했다. 미사때 단장님의 강론이 짧지도 길지도 않게 핵심을 잘 잡았다. 점점 강론의 내용과 기술(?)이 좋아졌다.

9월 8일

9월 8일

7시 30분 기상

8시 10분 식사

8시 30분 송전탑(낙양동)

노진민, 이현정, 정승기, 이정미, 김기연, 이용건, 박성태

8시 50분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개운동)

9시 30분 쓰레기 소각장 준비지(복동동)

10시~11시 계림동 성당 도착, 미사

11시 20분 상주 출발

12시 문경 모전 성당 도착

이회정 신부, 박인국(정평부장), 이회우(정평위원), 정장준(사목회부회장), 김상옥(사목회총무)

2시 모전 성당에서 안동으로 출발

3시 안동 송현동 성당

: 오영창(안동교구평의회장), 오일창(안동교구정평부

위원장), 김현택(안동교구정평총무), 김영경(정평위/구담성당/한겨레나눔운동)

5시 30분~6시 30분 조흥은행 앞 차없는거리 집회, 서명전

: 약 120명 참석, 안가대협, 전교조, 가농, 민주노총, 수녀님 약 20분, 평협, 사목, 생명의 공동체

8시 목성동 주교좌 성당 미사와 기도회

: 신자 약 260명 참석

◆활동상황◆

상주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 문제 쟁점 지역을 오전에 둘러보았다. 직접 보고 얘기를 들으니 더욱 심각하게 느껴졌다. 계림동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문경 모전 성당에 도착하여 안동교구 준비 상황과 집회 순서를 논의하였다. 점심 후 안동 송현동 성당으로 이동했다. 조흥은행 앞 변화가 광장으로 이동해서 많은 안동지역 사회단체 사람들과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미사는 목성동 주교좌 성당에서 있었다. 기도회와 같이 진행된 미사 강론은 신부님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위성에 대하여"였다. 미사 끝나고 바로 기도회가 이어졌다.

기도회는 가두서명, 선전전 했던 사람들 소개와 사제단 단식투쟁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노진민 단장님의 인사말과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인덕기 변호사의 "국보법 위헌성"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천주교연대 결성 선언문을 평의회장님이 낭독하는 것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도회가 마무리 되었다.

어느 지역보다 준비를 철저히 했다. 교구차원에서 준비해서 비록 지역 상황 때문에 자전거 순례는 하지 않았지만 지역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과거 좌우합작운동의 회의 장소였던 조흥은행 앞 광장에는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 약 40분간의 집회를 마치고 6시 30분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은 거점 서명, 스피치, 플랭카드와 이동서명, 울동과 풍물까지 해서 분위기도 좋았고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여러 언론사에서도 와서 취재해 갔으며 시민들의 반응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생각보다 많이 서명을 받았고 설령 서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예 냉담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

저녁 미사는 어느 지역보다 많은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참석했다. 강론과 기도회때 변호사의 강의 준비 등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논의하고 준비해 왔음을 느끼고 감동받았다. 89년 문규현 신부님 때의 시국미사 이후 10년만의 시국기도회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는가. 미사 끝나고 올리베따노 수도원 수도자 한분이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며 직접 만든 묵주를 주셨다.

9월 9일

9월 9일

7시 기상

9시 30분 목성동 주교좌 성당

9시 50분 송현동 성당

12시 30분~4시 30분 제천 도착(남천동 성당)

: 윤요왕(원주정평 사무국장) 결합

7시 30분 의림동 성당 도착

8시~9시 30분 미사

: 집전-김영진 신부(남천동), 고정배(매포), 김찬진(백원), 위종우(청진동), 김승오(서부동), 이흥근(의림동), 최영균(의림동), 신자 약 300명 참석

◆활동상황◆

목성동 성당과 송현동 성당에 들러 인사를 하고 제천으로 출발했다. 남천동 성당에서 김영진 신부님을 뵈고 숙소에서 조금 쉰 다음 의림동 성당에서 서명을 받고 미사에 참석했다. 6분의 신부님과 삭발, 단식 투쟁 중이신 성제 신부님께서 미사에 참석하셨다. 천주교연대 대표이신 김영진 신부님의 "누구나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제의 강론이 있었다. 끝나고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

대표 신부님이 계신 교구지만 그리 준비는 잘 된 것 같지 않았다.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지역 준비상황에 대해 다시 논의하였다. 저녁에 미사만 참석하셔서 그런지 할 일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강론이 좋아서 미사 끝나고 서명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9월 10일

10시 제천 떠남
 10시 40분 배론성지
 12시 원주교구청 앞 원동교회 도착
 2시~5시 30분 시내 자전거 행진. 시내 농협 사거리 서명. 원주시청 제2청사 앞 서명
 : 중앙순례단(7명), 윤요왕, 원가대연, 춘가대연, 최종복 신부

7시 30분~9시 미사와 기도회
 : 신부 15분-최기식(남천동/사회복지), 김영진(남천동), 정인준(교구청 사무처장), 신현안(사목국장), 박호영(형성), 광호인(단구동), 유명구(봉산동), 신동민(배포/사회복지), 고정배(*), 김현수(교구청/교육국장), 홍광표(일산동), 최종복(원동), 배도하(우산동), 김찬진(백운), 신자 약 100명, 강론-김영진신부, 강의-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단장님 인사,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문 낭독(고정배)

◆활동상황◆

아침에 제천을 떠나서 배론 성지를 방문했다. 신부님이 바빠서 잠깐 인사만 하고 사진찍고 배론성지로 떠났다. 원주에 도착하여 해마다 원동성당에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원가대연, 춘가대연과 함께 지역자전거 순례를 진행했다. 자전거는 모두 23대였고 중간에 농협 앞 사거리에서 많은 시민들과 만났다. 원주시청 제2청사에서 원주한지축체 때문에 모인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기도회때 15분이나 되는 신부님들이 참석하셨지만 생각보다 적은 수의 신자들이 참여하여 반응도 별로 없었다.

거점 서명에서 시민의 80%가 공무원이라는 원주의 시민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 마산처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의견의 차이가 많아 서명을 많이 받지 못했다. 서명을 많이 못받고 시민들과 견해차이를 보이자 지역 참가자들과 중앙팀이 많이 지쳤지만 거의 막바지 지역이라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서명을 마쳤다. 가대연에서 많은 사

람들이 함께해 주었다.

신부님은 15분이나 되는데 신자들은 너무 적어서 신부님들이 더 힘이 빠지신 듯 끝나고 평가회의를 하셨다. 정평위 윤요왕 사무국장님의 노력으로 그나마 가대연 학생들과 신부님들이 모이실 수 있었던 것 같다. 순례 막바지에 시민반응이 안좋아서 중앙순례단도 꽤나 힘들어했다.

9월 11일

7시 기상
 8시 원주 명동성당에서 춘천으로
 : 자전거 17대, 중앙(7), 원가대연(11), 춘가대연(2), 원주정평(1), 청주정평(1)
 2시 30분 춘천 도착(효자동성당)
 2시 30분~5시 30분 자전거 순례, 명동 서명
 : 자전거 17대
 7시 30분~8시 30분 효자동 성당 미사 참석
 : 신자 약 120명 참석

◆활동상황◆

원주에서 출발하여 시내를 벗어나 차로 이동했다. 지역 사람들과 자전거 순례를 하면서 명동에서 2군데 거점 서명운동을 2시간 가량 진행했다. 젊은이들이 많아서 젊은 층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마치고 자전거로 성당으로 갔으며 경찰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저녁 미사때 주임 신부님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의 호응이 적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관련된 주제의 미사는 아니었지만 마지막에 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원주에서는 춘천의 반응이 더 안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원주보다 춘천분들의 호응이 더 좋았다. 차근차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다 듣고 와서 서명을 순조롭게 해주셨다. 가대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나마 힘을 받았다.

9월 12일

8시 기상
 9시 서울로 출발
 12시 망우리에서 자전거 순례 시작
 : 자전거 14대, 참여인원 총 18명(원가대연, 춘가대연, 중앙순례단)
 2시 30분 명동성당 도착

◆활동상황◆

가대연 사람들과 서울로 출발하여 자전거로 오다가 차로 계속 이동하였다.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자전거로 순례하였다. 명동성당에 도착하여 마지막 정리집회를 열고 정리하였다.

원주, 춘천 가대연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원주, 춘천은 여성이 많이 참가해서 자전거 속도도 느리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 주어서 고맷다.



1999년 활동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리안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28
시행일 : 1999. 9. 18
수신 : 의원님
참조 : 보좌관님

제목 : 국가보안법 존속 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 대한 건

†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1.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먼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귀 의원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고문:김수환 추기경 외 4인,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이완영 수녀, 문국주 대표)는 2000년 대회를 앞두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 교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며, 특히 입법부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이에 대한 입장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이에 귀 의원께 현재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존속과 폐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 의원의 국가보안법 존속과 폐지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존속() 폐지() 기타()

(9월 29일까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을 때에는 무응답으로 처리하겠으며 의견서는 FAX 747-2447, 천리안 ID:KUKBOBUB)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고문 :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나길모 주교, 이돈명 변호사, 유현석 변호사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이완영 수녀, 문국주 대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리안kukbobub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30
시행일 : 1999. 10. 28
수신 : 국회의원님
참조 : 보좌관님

제목 : 국가보안법 존속 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 대한 건

1.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과 국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이하 천주교 연대)」는 2000년 대회를 앞두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 교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천주교 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귀 의원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나 존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 국보법에 대한 귀 의원의 입장은 첨부자료 2. 양식에 기입하여 11월 6일 이전까지 팩스나 우편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보낼 곳 : Tel 02-747-2448 Fax 02-747-2447 천리안 ID kukbobub)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2층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 첨부자료 1. 천주교 연대 소개
- 2. 설문양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고문 : 김수환 추기경·윤공희 대주교·나길모 주교·이돈명 변호사·유현석 변호사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이완영 수녀·문국주 대표

첨부자료 2.

▶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소속정당: 의원명:)

존 속	
폐 지	
부분 개정	
의견 없음	
기 타	

의견란

▶ 존속·폐지·부분 개정·기타에 기입하신 후 특별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입하여 주십시오

* 가능하시면 11월 6일(토) 이전에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천리안kukbobub ;

문서번호 : 국보법 연대 99-28
시행일 : 1999. 9. 30
수신 : 지구당 위원장님
참조 : 사무국장님

제 목 국가보안법 존속 폐지에 대한 의견조사에 대한 건

1.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구당 위원장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이하 천주교 연대)」는 2000년 대회를 앞두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 교회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천주교 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님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귀 위원장님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나 존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 국보법에 대한 귀 위원장님 입장은 첨부자료 2. 양식에 기입하여 10월 9일 이전까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보낼 곳 : Tel 02-747-2448 Fax 02-747-2447 천리안 ID kukbobub)

- * 첨부자료 1. 천주교 연대 소개
2. 설문양식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고문 : 김수환 추기경·윤공희 대주교·나길모 주교·이돈명 변호사·유현석 변호사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이완영 수녀·문국주 대표

- 9. 6 임시총회 - 12개교구 43명의 신부 참석, 식발과 단식기도 결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기적 중요성을 인식 단식기도 결의
- 9. 7 단식기도에 들어가며 기자회견후 15명의 사제 식발 단식기도 시작 발표(32명의 사제참석)
오전 10시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식발단식기도 돌입, 후에 5명의 사제 추가식발
명동성당 성모동산에서 매일 오후 8시미사(평균 130명 참석)
단식기도 하루소식 발행
- 9. 8 명동성당 들머리에 교회단체 동조텐트 설치
한겨레신문 매일광고 조직
- 9.10 노동사목(10명), 예수살이(1명) 동조단식시작
- 9.12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 자전거 전국순례단 명동도착
- 9.13 국가보안법 폐지 1차시국기도회
오후 8시, 시국미사(천주교연대, 정의구현사제단)
- 9.14 마산교구 동조단식(마산교구청) 사제 16명(9/14-24)
매주 월요일 시국기도회
- 9.27 시민단체와 연대기구 결성식(50개 단체)
- 9.1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거리미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주교구사제단과 전북시민연대 동조단식, 사제 11명, 전주교구청 시민연대, 덕진성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안동교구 동조단식, 사제8명, 목성동 주교좌 성당
- 9.17 천주교여성공동체 동조단식
- 9.20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행사(오후 7시)
- 9.2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내.외신 기자회견(오전 11시, 단식기도장)
NHK, LA타임스, YTN, 한겨레 등
- 9.22 천정연 제단체 동조단식 시작
- 9.27 국가보안법 폐지 범종교인대회 오후 7시, 명동성당 들머리
- 9.28 인천교구 사제 동조단식 시작, 사제 20명, 인천 교구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각층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오전 11시, 명동성당
- 10.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 1차 범국민 행동의 날 -오후2시, 대학로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

1. 취 지 :

현재 정치권이나 사회단체에서 국가보안법에 관한 논의는 분분하나 교회 일반 신자나 수도성직자에서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년 실천운동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천주교연대는 국가보안법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순회강연회를 통해 신앙적, 법리적 소양을 높임으로써 대회년의 의미를 인권적 의미에서 재해석하고 회년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 주 제 : 대회년과 인권

3. 일 시 : 10월 중순이후부터 - 12월 초순까지

4. 장 소 : 본당성당이나 교육관, 수도회 및 단체에서 지정한 장소

5. 운 영 : 본당 및 단체와 협의하여 천주교연대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가. 강의전후로 국가보안법 관련 만화전, 책자, 홍보물 배포, 서명운동을 함께 한다.
- 나. 본당신자조직, 홍보 - 본당주보 알림광고, 제단체 회합시간에 알림광고, 인근본당 홍보, 강의실무등 정리 (마이크, 엠프시설 등), 강의진행 (사회자 선정) 등은 본당에서 추진한다.

6. 강의주제와 강사 : 주제와 내용은 본당 및 수도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주요내용

1주제 : 교회사와 인권 (마녀사냥과 국가보안법)

- 1) 내용 :
 - 세계교회사에서 중세 마녀사냥과 같은 역사오류에 대한 인식.
 - 한국교회사에서 초대교회와 해방이후 교회내에서 분단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갈등 조명
 - 국가보안법 법적 적용문제와 인권침해문제 조명
- 2) 강사 : 성 영교수(서강대), 강인철교수(한신대), 광노현교수(방송대), 유현석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덕우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박원순선생(참여연대), 서준식선생(인권운동사랑방), 채수일선생(참여연대)등 섭외가능

2주제 : 영화로 보는 인권

- 어머니 보랏빛 수건 (48분) - 양심수들의 이야기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MBC TV 다큐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리즈 中 '끝나지 않은 동백림사건', '조봉암과 진보당'

- KBS TV 다큐물 (해방) 시리즈 中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 등
- 천주교인권위원회 '내가 너를 죄없다 하리라' - 조작간첩 사진을 다룸 (50분)
- '동창회' -영남위원회 사건의 재판과정, 가족들 이야기 등으로 꾸며짐(50분)
- 푸른영상 '20일간의 고백' - 문민정부 하에 일어났던 두 가지 간첩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이야기(50분).
- 김형찬사건 대책위원회 - '김형찬 사건 애니메이션' (5분).

3주제 : 회년맞이와 인권

1) 내용 :

- 2천년 대회년의 의미 (역사적 의미, 교회사적 의미, 신앙적의미)
-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회년운동과의 연관성 의미 고찰

2) 강사 :

문정현신부(사제단), 김영진신부(천주교연대), 신성국신부(청주교구), 이준형신부(광주교구), 조성제신부(부산교구), 호인수신부(인천교구), 김귀식선생(빛두레), 박순희선생(천정연), 변진홍교수(가톨릭대) 등 섭외가능

4주제 : 나와 국가보안법

1) 내용 : - 장기수 선생님들의 삶과 국가보안법

2) 강사 : 장기수 선생님

- * 위 내용은 본당, 수도회 및 단체와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 * 기본 주제 중 한주제만을 택할 수도 있으며 미사 강론시간을 할애하거나 기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문의와 강연회 유치요청은 천주교연대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TEL : 02-747-2448 FAX : 02-747-2447 HP : 018-223-6290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일기 : 1999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1000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6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동 60-10 한양빌딩 2층
TEL: 02-747-2448 FAX: 02-747-2447 HP: 018-223-6290

차별

1주제 **현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 _____ 1
 배서 : 서영모 교수

2주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_____ 2
 배서 : 김남호 변호사

3주제 **조국회라는 시대정신을 위하여는 신정헌법** _____ 3
 배서 : 서영모 교수

토론회의 결서1 **조국회** _____ 4
 조국회헌법 제4조를 제헌헌법으로

토론회의 결서2 **박정희** _____ 5
 조국회헌법 제4조를 제헌헌법으로

진행순서

2:00 ~ 2:30	개회식 내빈소개 등
2:30 ~ 3:30	주제발표 토론
3:30 ~ 3:50	휴식
3:50 ~ 4:50	주제발표
4:50 ~ 5:30	같이 잊을래 토론

사예 : 김경태 변호사 연구원 연구원에게

1주제 **발제문**

현 국내외 정세속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

이 장 희
 한국 외국어대학교수 / 국제

- I. 문제제기
- II. 국가보안법의 제정당시의 상황
- III. UN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단체의 측면에서 본 국보법
- IV.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및 UN 동시가입후 국보법의 의미
- V. 국내정치상황의 변화에서 본 국보법
- VI. 맺는말

I. 문제제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내외 정세가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변화하였다. 다시말해 국제적 차원, 민족적 차원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의 두가지 대전제인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그리고 국가안보 위협의 규제라는 명분이 변화된 국내외정세속에서 그 존립기반을 잃고 있다.

우선 나라 밖에서는 탈냉전에 따라 독일통일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의 해체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토와 경쟁했던 바르샤바기구가 해체되었다. 한국은 1990년 소련과 수교하고, 1992년에는 중국과 수교하였다. 한국인은 과거와 달리 어느 나라든지 자유로이 여행을 할수 있다. 그런데 왜 같은 민족인 남북한 사이의 자유왕래에는 아직도 법적 걸림돌이 있는가? 미국무성은 1994년 이후 계속 국보법의 폐지를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있고, UN인권위원회는 1998년 12월 국보법 제7조(고무찬양죄)가 국제인권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족적 차원에서는 남북 쌍방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 실체를 인정,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같은해 9월 남북은 UN에 동시에 가입해 최소한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였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50년만에 제대로 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제 정부와 집권정당이 대북포용정책을 굳건하게 내세우고 냉전구조의 근본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북한 잠수정 출현, 인공위성 발사, 서해5도교전사태 등으로 보수적인 여론의 강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국민의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1일로 금강산 관광객이 10만을 돌파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변화된 국내외적 정세속에서 현재 개폐논의 중인 국가보안법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국가보안법의 제정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II. 국가보안법의 제정당시의 상황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였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과 사상에방구금령 등을 모델로 한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의 이식,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 등의 목적이 결합되어 한국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의 제정될 당시에는¹⁾ 여순사건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폭동이 준동했다. 이에 당시 자유당 정권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급박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게끔 몰아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형법 등 일본법제와 군정법령등에 의하여 폭동과 반란에 대한 처단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일제하의 치안유지법과 다를바가 없다든지, 구형법상의 내란죄 등과 중복된다든지, 사상과 인권탄압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든지 하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격렬하게 반대사를 표명하였다.²⁾ 그러한 반대논거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좌익세력의 파괴활동과 국가존립의 위기라는 명분속에서 국가보안법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 통과를 강조한 의원들까지도 당시의 상황이 극도의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와 악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보법의 한시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1949년 12월 19일과 1950년 4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몇가지 중요한 조항에 관한 개정과 신설을 하게된다.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높인 것, 단심제로의 규정, 보도구금제의 신설 등이 그것이다. 이 제1,2차 개정법률은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6.25를 겪게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개정되는 법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58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개정법률은 종전의 법률보다도 훨씬 확대되고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조항이 있었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슬경관을 동원하여 야당의원들을 끌어낸 상태에서 여당인 자유당의원들의 일방적인 결의하에 통과됐다.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여당이 국가보안법개정을 통과시킨 것은 그 당시 이미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차기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반대세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강화할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기위해서였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그 후에 바로 야기되는 경향신문 폐간 조치, 진보당 조봉암씨 처형 등 일련의 정치적 탄압행위에 의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4.19혁명에 의하여 들어선 민주당 정부는 종래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훨씬 약화된 국가보안법을 다시 제정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조차도 정권안보차원에서 혁신세력 등을 규제할 필요를 느껴 또 다른 반공규제법안을 만들려 했으나 격렬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공태세의 강화를 구호로 집권한 5.16 쿠데타세력은 민주당 정권하의 혁신세력에 대해 광범한 탄압을 가하는 한편, 지금까지 있었던 국가보안법보다도 훨씬 약화된 모습의 [반공법]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새로이 제정하게 된다. 이로써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두 개의 법률이 소위 안보형사법의 2대 지주로 자리하게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악용이 손쉬운 반공법이 훨씬 자주 애용되었다. 제3공화국 1961-1980년사이 국보법위반자가 1968명인데 비하여, 반공법위반자는 4167명에 이르렀다. 이 당시의 반공법 남용은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 반공법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이유가 된다.

더구나 1974년 이후 나타나는 긴급조치는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형식적 구조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국

1) 이 국가보안법은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고 국가조직이나 운동의 기본법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지기 이전에 제정된 것이다.
2) 제99차회의에서 폐기주장에 동조한 44명, 제105차 폐기동의안 제출자 47명, 제105차회의에서 폐기동의안 가결당시의 찬성자 37명, 제108차회의의 제1조 삭제동의안 찬성자 22명이 그것이다.

가보안법이나 반공법까지 동원할것도 없이 바로 긴급조치에 의해서 모든 정치적 의사가 차별되는 극악한 상황을 드러내게 된다.

1980년 초 민주화의 봄을 억누르고 탄생된 제5공화국정부는 반공법에 대한 원한의 여분을 호도하고 국제 개방화의 추세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종래의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합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단일화 시키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였을뿐 실제에 있어서는 반공법의 조항이 국가보안법으로 고스란히 수용, 흡수되어 달라진 것이 없었다. 즉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그동안 국제적 비난을 면치못하였던 반공법의 폐지라는 모습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반공법의 내용을 그대로 국가보안법에 흡수한 것이었다. 이후 적용과정의 엄청난 남용³⁾은 가히 제5공화국을 국가보안법의 시대라고 호칭할 만하였다.

1980년 후반 노태우정권은 동구권의 몰락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한 판결을 계기로 1991년 국회에서 국보법을 일부 개정했다. 그러나 그 기본 골격에서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후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일체의 개정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96년 12월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에 대해 안기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악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1994년 7월 소위 김일성 조문 파동으로 진주 경상대학 교수 10여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위반혐의로 연행, 구속하는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보법을 악용하였다. 아직도 그 중 피해 교수 2명은 5년이 넘는 현재까지 사법적 굴레를 못벗어나 불구속기소상태에서 인권침해 행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그동안 정권의 부침과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가보안법은 강화, 악용되는 추세를 보여 준다. 당초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당시에 제정의 이유가 되었던 좌익세력의 파괴활동과 전국적 규모의 폭동이라는 비상사태는 1950년 6.25사변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제거되었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졌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안의 내용은 강화를 거듭해온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가 된다. 역대정권은 저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와 남침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설명해왔지만, 오늘에 와서 우리의 정치사를 회고해보면, 그러한 설명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처방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권의 부도덕과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위기의식의 조작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본다.

III. UN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단체의 측면에서 본 국보법

1. UN인권위원회

지난 1998년 10월 22일 UN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이적단체 가입 및 활동) 위반으로 지난 93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태훈씨의 제소⁴⁾에 대해 국제인권 B규약 제 19조

3) 5공화국 당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2,232명이고, 기소된 사람은 1,565명이었다. 이중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죄)로 구속된 사람은 92.8%, 제7조로 기소된 사람은 95.5%이었다. 이 5공화국때의 비율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1년간 총 413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중 92.2%에 제7조가 적용되었다. (가칭) 반 국가보안법 국민연대(준비모임) 기자회견자료집, 1999년 9월 1일, 오전 11시 배포된 자료집 참조.
4) 박태훈(36)씨는 지난 83년부터 89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유학하던 중 재미한국청년연합(한청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귀국직후 안기부에 구속돼 93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안기부/검찰은 언론발표와는 달리 재미한청련이 이적단체이며, 이에 가입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박태훈을 국보법 제7조 2항 및 3항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

3항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결정을 내려 한국정부에 적절한 시정과 조치를 권고하였다. UN인권이사회는 1994년 8월 박씨로부터 제소받은 이래 4년여 동안 이 사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박씨에 대해 적절한 금전배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담은 결정문을 번역·공개하는 한편, 사법부에 이사회에 결정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해 그 결과를 90일 이내(3월 중순까지)에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던 것이다. 한편 인권이사회에 제소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은 '안보를 위한 국보법 불가결'과 '시간적 요건으로 허용 불가'에 두었다.

'안보를 위한 국보법 불가결'이라는 정부측의 반박에 대해 UN인권이사회는 결정문에서 "한국정부는 박씨가 행한 표현의 자유"행사로 인해 생겼다는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며 "한국정부가 내세운 어떤 주장도 박씨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의 특정한 권리보다 국보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주장에 대해 "규약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못박아 정부가 국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에 대응해 오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⁵⁾

'시간적 요건으로 인해 허용불가'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이사회는 통보자의 사건이 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고등 군사법원과 대법원은 가입시점 이후에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규약이 적용되며, 이 제소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보법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난 국내사건에 대해 UN산하기구가 '규약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UN인권위의 이러한 통보는 국보법개폐를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분위기 형성의 단초를 마련했다. 한국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국제인권 규약(B규약)과 규약이행여부를 감시한 UN인권위 활동을 인정하는 B규약 선택의정서를 모두 비준했기 때문에 이 결정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⁶⁾

그런데 금년 1월 27일 법무부는 UN 인권이사회 결정의 수용을 거부했다. 즉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씨사건에 대한 UN인권이사회 결정사항 중 핵심내용인 유사한 위반사태 제발 방지와 금전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태이므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없는 한 금전배상은 불가능하다"며 유사한 위반사태 제발방지도 이미 국보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있어 국보법 개폐 등 다른 조치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⁷⁾

그러나 법무부의 이러한 수용거부입장에 대해 시민, 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의 핵심내용인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국보법의 엄격한 적용과 개폐를 통한 제발방지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크게 반발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박씨 사건과 비슷한 국보법 사건에 대해 수없이 유죄판결이 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해당 당사자는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되고, 이사회는 박태훈씨 건에 대한 유사한 결정 대로 한국정부에 인권규약 위반과 시정조치를 내리는 일을 계속하게 될 때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미 7년전인 1992년 7월 UN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B규약)에 따른 한국의 최초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다. 재판부도 당시 헌정권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였다. 상세한 사건개요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 수용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9년 2월 26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참조. (이하 국보법 철폐 자료집 1999)

5) 국보법 철폐 자료집(1999) 참조

6) 1990년 대한민국은 UN인권규약 A규약(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인권), B규약(시민적 정치적 인권)에 가입하고, B규약 선택의정서에 비준하였다. 물론 몇가지 유보를 부쳤다. 특히 제B규약은 가입 즉시 바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7) 한겨레신문, 1999년 1월 28일, p.27 참조.

"... 위원회는 국가부문이 협약의 조항에 부합하는 입법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완전히 실현시키는 데 있어 국가보안법이 주요한 걸림돌이라 보여,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또 1995년 11월 의사와 표현의 자유 신장과 보호에 관한 유엔 인권위 특별보고관 후세인은 한국방문후 다음 권고사항을 제출하였다:

a) 대한민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세계인권선언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다른 국가안보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c)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모든 수인들은 무조건부로 석방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하에서 재판 받은 수인들의 사례는 재심되어, 당연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의무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상기 박태훈 씨 사건에 대한 1998년 12월 UN 인권이사회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용거부에 대해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는 강한 비판을 하였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은 남한정부의 국보법문제에 대해 "남북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개정조차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특히나 현정부 들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계속 그 시정을 요구고 있다

2. 국제 엠네스티로부터의 강한 비난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국제 엠네스티가 국보법등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취한 입장을 살펴보자.

1998년 9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 대한 "외교정책과 인권"이라는 보고서⁸⁾에서 인권이란 더 이상 국내문제가 아니며, 모든국가의 국제적 관심과 책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의 정치적 박해를 받은 자이면서 양심수인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덕적 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8년 9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대한 우려와 권고⁹⁾에서 "국가보안법은 국제기준에 맞게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호되도록 개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엠네스티는 1999년 2월 "지금 이 국가보안법을 개혁할 시기이다"라는 보고서¹⁰⁾에서 도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선을 1999년의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남한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한국이 가진 안보상 어려움과 자국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모든국가의 권리

8) Republic of Korea,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Report-ASA 25/31/98, September 1998, Korea, p.1 참조.

9) Republic of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Report-ASA 25/27/98, September 1998, Korea, p.8 참조.

10)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 ASA 2525/03/99, February 1999, Korea: Republic of Korea, Time to reform the National security Law.

를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안보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오용되어왔다.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정치적 입장을 세우는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대북관계를 둘러싼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리고 사회적 불안시기에 통제의 한 형태로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왔다. 1998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고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확고한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¹¹⁾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장관은 국가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반대가 인권신장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을 국제앰네스티에 전하였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의 존중은 한국의 장기적 정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진단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은 수치스런 행위이다." 라고 하면서 경제상황과 정치적 반대는 절대 국가보안법에 의한 앞으로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¹²⁾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상기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다음사항을 권고 했다¹³⁾ :

- 국가보안법은 충분히 개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보안법률의 제정은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 자신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모든 정치적 수인들은 반드시 무조건부로 석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준법서약서"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998년 사면에서 석방되지 못한 장기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UN 인권위원회와 다른 유엔기구들이 제시한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미국국무성의 국보법 폐지 권고

1994년에 미국무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정간섭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1995년 1월 국무부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인권의 주된 장애'라는 견해를 밝혔다.¹⁴⁾

4. 독일과 타이완의 사례

과거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처음부터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이 없었다. 분단과정중에도 자유왕래를 규제하거나 그 자체를 범죄시키는 법은 서독에서는 없었다. 오히려 서독은 동서독 자유왕래를 촉진하기 위한 많은 법규정을 만들었다. 이념적으로도 1956년 8월 금지된 공산당(KPD)이 12년이 지난 1968년 9월에 독일공산당(Deutschen Kommunistischen Partei:DKP)의 활동을 허용하였다.¹⁵⁾ 통일이후에는 과거 동독 사회주의 통일공산당(SED)의 후신인 민사당(PSD)도 합법적으로 허용하였다. 다만 서독은 나찌와 같은 전체주의체제의 재현을 막기위한 법률을 통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의 등록을 제

11) Ibid.
12) Ibid.
13) Ibid.
14) 동아일보, 1995.2.3 일자.
15) Chronik der Deutschen, Chronik Verlag, 1968, p.1038

한한 것 뿐이다. 또 타이완의 경우 중국본토와 비교하여 국력에 있어서 한국보다 불리한 분단상황에 처해 있고 1950년 한국전쟁 중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처형당했다.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면서¹⁶⁾ 국가분열(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것을 전혀 처벌하지 않으며,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1990년 이후 대만에는 실제 정치범, 양심수가 없다는 사실을 몇 년전 대만 밀진당 소속 대만인 권협회가 발표한 바 있다. 이념적으로도 사회주의와 중국본토 중심의 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노동당을 합법적으로 1989년에 이미 허용하였다.

M.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및 UN 동시기입후 국보법의 의미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기반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이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면 동법은 더 이상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사에서 확인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로 하고 그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UN에 동시기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자기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법규범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헌법의 통일관련조항에서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같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 또는 미수복지구]로 보는 입장과 헌법의 전문, 제4조 등에서 규정한 평화통일을 전제로 [최소한 북한을 정치적 실체 나아가 사실상 국가]로 보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그런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서는 남북한의 법적 관계를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짓고, 그 제1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하였고,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남과 북의 평화공존 내지는 정치적 실체의 인정 내지 존중을 함의한 것이다. 특히 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남북한의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고 있다. 이 「특수관계」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국제법적 관계로, 쌍방간의 관계에서는 민족상호간의 내부관계로서 국가와 교전단체의 중간성적인 「분단체(divided entities)」¹⁷⁾의 자격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1991년 남북한 UN동시 가입은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한은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공인화 되었다.

또 1993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에서 그 첫 번째 단계인 [화해, 협력]단계는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을 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단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1950년대 냉전질서시대와 같은 경직된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우리정부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도외시한 냉전적 사고라고

16) TSE-KANG LENG, The Tawan-China Connection, SMC PUBLISHING INC., 1996, 47-50 참조.
17) 분단체(divided entities) 또는 분단실체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면서도 타방분단체가 정치적 이유에서 그 국가성을 부인하는 정치실체이다. 국가와 유사한 이 정치실체는 하나의 類似국가에 지나지 않지만 일정한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지닌다. 이는 국가와 交戰團體의 중간쯤의 법적 지위를 지닌다. 웨이(Young Wei)도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가 국가와 교전단체 중간에 위치하는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Young Wei, "Divides Nations and International Law: Political Reality and Legal Practice", Occasional Papers/Reprint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1981참조.

많은 비판을 학계와 헌법재판소로부터 받고 있다. 특히 헌법제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거하여 종전처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경우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합의는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제도)를 인정, 존중(제1조)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위헌론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법적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추진되는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은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범법행위가 된다.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도 그러한 입장에서 위헌성이 제기되어 평화통일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상 영토조항 제3조의 국제법적 근거로 알려진 1948.12.12의 유엔총회 결의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지역에서의 유일합법 정부임을 인정한 것이며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한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부이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치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고, 우리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엔가입은 다시 한번 북한이 합법적 주권 국가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국가보안법의 내용상의 문제점은 별개로 하고,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 협력을 위축시키고 화해, 협력이라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시대정신을 거역하는 법으로서 현대에서 제일 먼저 정비되어야 할 법임에는 틀림없다.

V. 국내정치상황의 변화에서 본 국보법

국내적으로는 남측에는 50년만에 국민의 힘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였다. 그동안 탈냉전이라는 호조진에도 불구하고 역대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에 의해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룩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두가지 당면과제에 부딪친다. 그 하나는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나가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대북정책의 문제이다. 이것은 민족내부의 문제라 할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 가로 놓여있는 냉전구조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국제냉전이 끝난지 10년이 되었으나, 냉전의 희생자인 한반도만이 아직도 반세기나 지속된 냉전구조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금강리 지하핵의혹 시설문제라든지 미사일문제 등은 냉전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적 성격을 띄고 있다.¹⁸⁾ 이러한 두가지 과제에 대한 새정부의 정책은 대북포용정책으로서 북한의 도발 불용, 흡수통일배제, 적극적 교류, 협력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이러한 대북 3대원칙은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와 북한도 변하고 있다는 양대 틀에서 출발한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적으로는 야당도 아닌 여당과 현직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항상 야당은 국보법의 수호론의 입장인데, 이제 그 입장이 거꾸로 되어 야당이 국보법개폐를 반대하고 있다. 바로 2년전만 하더라도 국보법 폐지는 反美 주의자이며 체제전복자로서 친북자로 낙인찍히기가 십상이었다. 정말 격세지감이 든다.

또 남북한간에는 98년 11월부터 금강산관광 재개로 1999년 9월 1일 현재 약 10만명이 북한땅을 다녀왔

18) 최성,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 1999년 5월 26일,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주최 학술회의 자료 집.
19) 상계서

다. 북한도 지난 98년 헌법개정을 통해 여행의 자유를 신설 한점,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점, 1년에 약 100명 이상의 북한엘리트들 서방국가에서 국제법, 시장경제, 국제관계 등 연수를 시키는 점, 테러 방지협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점, 남북한 당국간 차관회담에 임한 점 등 나름대로의 변화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제 국민의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완화와 더불어 북미수교, 북미수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정부는 4자회담을 제의하면서도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일관계와 북미관계의 조율을 미국,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곤 했다.

이처럼 국내외정세는 탈냉전후 세계화와 평화 그리고 인권존중 그리고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및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큰대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적 정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룹들이 아직도 많은 저항을 하고 있지만 시간문제라 보인다. 그런데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향한 보편적 가치와 큰 흐름의 발목을 잡는 2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 첫번째 법적 걸림돌이 국가보안법이고, 둘째의 걸림돌이 50년 동안 타성에 젖어온 국민들의 냉전의식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하는 국내적 기반이 약해지자 국가보안법의 개폐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다. 전자는 법제도의 개폐의 문제로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현 할수 있는 문제이고, 후자 냉전의식의 청산은 통일교육의 문제와 남남대화등 시간을 요한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의 변화는 국보법의 판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보법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해야한다]는 한정합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판결에 따라 1991년 국보법 개정이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즉 1991년 국보법 개정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또 다시 위헌시비에 휘말렸다. 이에 1995년 1월 부산지법 박태범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국보법 제 7조 1항, 3항, 5항(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을 내리고 이 규정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위해를 줄 때만 처벌할수 있다]고 하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와 같이 한정합헌 판결을 통해 현행 국보법의 위헌성을 재확인, 인정하고 그 적용의 엄격성을 판시했다. 그러나 그후 실제 사법부와 검찰은 그 해석과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인권이 탄압당하고 있다.

VI. 맺는말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은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UN인권이사회, 국제엠네스티 그리고 미국국무부도 표현의 자유를 통한 비폭력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죄)는 분명하게 국제인권규약 제18조(양심, 사상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강하고 주장 하고 있다. 특히 1998년 12월에 공개된 박태훈씨에 사건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결정은 국가보안법문제에 대해 '남북이 대치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개정조차 불가하다는 남한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즉 이결정은 이적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위해를 입혔음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구속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의 근본적 개폐없이는 UN인권이사회 결정과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계속될 것이며, 이것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민족 쌍방간의 차원에서 국보법의 존립기반이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같은해 9월 남북한

UN 동시가입이후에 붕괴되었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기반은 북한을 반국가단체(제2조)로 보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을 규제(제1조)하자는 데 있다. 한반도의 정세의 변화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의 의미가 완전히 상실했다.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적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참칭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단체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양 사칭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남북쌍방간에는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잠정적인 특수관계(전문),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제1조)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불가침(제11조), 상호 내정불간섭(제2조), 모든분야에서 교류, 협력 촉진(제15조, 제16조)을 약속하였다. 분명히 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쌍방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명문화하였다. 또 남북한은 1991년 UN에 주권국가로서 동시 가입하였다. UN 가입의 형식적 조건은 1)주권국가 2) 평화애호국일 것 3)UN헌장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UN회원국이 됨으로써 최소한 UN차원에서는 주권국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실제로 북한은 80여 개 국가와 이미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처지에 북한을 '진정한 정부로 사칭'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남북한은 주권국가간의 관계이며, 제3국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을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단지 민족내부적으로 먼 장래의 '통일'을 의식하여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합의서는 규정하고 있다.

국내적차원에서는 새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내세우고 북한의 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적극적 교류, 협력추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대북 3대원칙의 양대들이 냉전구조의 근본적 해체와 북한도 변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한다.²⁰⁾ 그리고 현재 국민여론의 절대다수(63.1%)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바라고 있다. 즉 <한겨레>여론조사결과 58.1%가 개정, 5.2%가 폐지, 그 반면 6.7%가 개정을 바라지 않고 있다. 더욱 흥미있는 것은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더 강화해야 한다'(24.3%)는 의견보다 '대폭 개정해야 한다'(30.%)는 주장이 많았다.²¹⁾ 이것은 국보법의 국내적 존재기반의 약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보법의 개폐주장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가보안법 제정당시의 남로당의 군사적 무력행위도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지난 반세기동안 정통성이 빈약한 역대정권은 국민들의 적색혐오증을 자극하여 정권안보를 위해 국보법을 악용하였다. 국보법사건은 거의 예외없이 미묘한 정치적 시기에 그 적용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보법사건은 참혹한 고문에 의한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때, 국보법은 국가안보에 기여하기보다는 정권안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신뢰해온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참혹한 인권침해와 고통을 주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을 양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보안법 제정 50년(12월1일)을 맞아 <한겨레> 여론조사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여기서 국가보안법이 지난 50년동안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42.6%와 법학교수의 69.0% 및 변호사의 56.9%가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이었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3.2%, 법학교수 20.0%, 변호사 28.1%로 나타났다.²²⁾ 따라서 자유민주체제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20) 상계서

21) 1999년 8월 23일자 <한겨레>여론 조사결과, 한겨레신문 1999년 8월 24일자.

22) 한겨레신문, 1998년 11월 26일.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최병모
변호사

1.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경과
2. 현행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운용실태
3.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 반대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4. 결 론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1. 국가보안법 제정배경과 경과

가. 정부수립 직후인 1948. 10. 19. 발발한 여순반란사건이 불과 8일 후인 10. 27.경까지 진압된 직후 국회에서는 11. 20. 전문 5개조항의 국가보안법이 상당수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통과되었다. 당시의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까지도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그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좌익세력을 척결할 필요가 긴급하다는 제정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득세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은 1948. 12. 1. 법률 제10호로 공포되었다.

나. 당시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극력 반대한 상당수의 의원들이 주장한 반대론의 논거는 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② 법의 성격 자체가 반민주적이며, ③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④ 남북통일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등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려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모두 하나같이 현실화되었다.

그 밖에도 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다른 처벌법규에 의해 대응이 가능할 뿐 아니라, ⑥ 사상은 사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하여 사상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역시 당시의 물론 현재에도 타당한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1949년 한해동안 이 법에 의해 검거 또는 입건된 자가 무려 118,621명에 이르렀다. 그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132개 정당과 산하단체가 해산되었다. 방첩대 및 군수사기관에서 이 법에 의해 입건 또는 구속되거나 숙청된 군인이 무려 8천명에서 9천명에 이르렀다.

다.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한마디로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을 투옥, 처벌하는데에 이용되었던 악명높은 "치안유지법"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그 처벌대상이 사실상 동일하다.

이와 같은 일제의 악법이 어찌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 부활하게 되었는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초기부터 친일 반민족적 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여 일제 하에서 치안유지법에 의해 무한한 고초를 겪어야 했던 민족주의세력을 정부와 국회에서 완전히 배제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통치수단으로 치안유지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8.15 해방에 이은 3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의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동안 구일본제국에 부역하였던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도 못하였고, 정부수립 직후 설치된 반민특위는 그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 이승만에 의하여 강제해산되어 건국 초기에 친일잔재를 청산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한편 친일부역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미군정 하에서는 친미파로 변신해 행정, 사법, 치안조직에 기용되었고,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우파집단으로 변신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수립 당시 창설된 한국 국립경찰 간부의 8할 이상이 일제시대 일본 헌병경찰의 중하위급 간부나 밀정 등으로 일본에 부역한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잔재를 실질적으로 청산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제정된 당초의 국가보안법은 그 후에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더욱 개악되었다. 그리고 1948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50여년 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위력을 떨쳐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당초 제정반대론자들이 우려하였던 대로 남북분단을 법제화하여 통일운동에 심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현행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운용실태

가. 머릿말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구성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 7. 3. 반공법을 법률 제643호로 공포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함께 시행되었다.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역시 12.12 군사쿠데타 세력이 구성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0. 12. 31. 종래의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통합하면서 법률 제3318호로 전면 개악하였던 것을 1991. 5. 31. 제6공화국 국회에서 법률 제4373호로 다시 소폭 개정한 것이다.

1991. 5. 31.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금품수수(제5조 제2항), 잠입, 탈출(제6조 제1항), 찬양, 고무, 동조(제7조 제1항), 회합통신(제8조 제1항) 등의 조항을 수정하여 그 행위를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주관적구성요건요소를 추가하였고, 그 밖에 일부 조항을 손질한 것이다. 그러나, 위 개정에서 추가된 주관적구성요건요소 자체가 그 개념의 불명확성과 다의성, 포괄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 그 결과 이와 같은 부분적인 개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위 한정합헌 결정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실질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없는 해석론을 전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하여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아래서 한정합헌과 같은 변형결정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한편 노태우정권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주문과 유사한 문언을 개정

국가보안법 조항에 편입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률 개정함으로써 합헌적 외관을 갖춘 것처럼 가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악법성)

종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1) 죄형법정주의 위반

국가보안법은 전체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어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따라서 법률의 해석 적용과정에서 법집행자의 자의에 따라 얼마든지 유추, 확장 해석될 여지를 그 자체로서 안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이와 같은 법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다는 규정, 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등에 사용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개념, 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사용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용어,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에 사용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다는 용어, 법 제7조 제1항 등에 사용된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한다는 용어 등은 너무나 막연하고 불명확한 개념들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여부는 오로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2) 형식법 또는 추상적 위헌법적 성격

국가보안법은 그 처벌규정의 대부분이 그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익침해의 결과나 구체적인 위헌성마저 없는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형식법 내지 추상적 위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제3조), 자진지원, 금품수수(제5조 2항), 잠입, 탈출(제6조 1항), 찬양, 고무(제7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등의 행위가 있는 이상 이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발생이나 국가적 법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마저도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안보'라는 추상적 개념과 결부되어 결국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헌성이 없는 행위마저도 법집행자의 자의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위학생이 미군철수, 독제타도 등의 구호를 적은 유인물을 작성한 행위 또는 이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되어 온 무수한 사례들이 그것이다.

(3) 형벌법규의 중복, 가중 — 다른 형벌법규에 의한 처벌로서 충분

국가보안법은 이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 간첩죄 등과 중복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법 규정 자체를 인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다수에 달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형법 이외에 별도의 특별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범죄들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행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요소중의 일부만을 분리하여 그 행위를 따로 처벌하면서 그 법정형을 매우 가혹하게 가중하고 있다. 이

점 헌법상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벌법규는 법질서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이하 "법") 제3조의 범죄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행위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인데, 반국가단체 자체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되는 이상(법 제2조 제1항) 그것은 형법상의 내란 또는 외환유치(형법 제87조, 제92조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위 국가보안법의 조항은 내란 또는 외환유치행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 목적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고 있는 결과 수사기관이 오로지 실제로는 처벌의 가치가 없는 노동단체나 민주화운동단체 등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법 제4조의 범죄는, 법 제4조가 인용하고 있는 형법조항 각 본조의 범죄행위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 외환의 죄(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해당하는 각 행위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일반의 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불명확한 구성요건을 부가하면서 그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실로 가혹하게 가중하고 있다.

3) 그밖에, 법 제5조의 자진지원, 금품수수, 제6조의 잠입, 탈출, 제8조의 회합, 통신, 제9조의 편의제공 등의 행위 역시 그 성질상 형법상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형법 제87조, 제88조, 제92조 내지 99조)를 구성하는 행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거나, 기껏해야 그 공범 또는 중범을 구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로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4) 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는 그것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공범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도대체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일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처벌하는 점에서 부당할 뿐 아니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마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에 반한다.

(4) 기본권의 침해 —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국가보안법, 특히 법 제7조의 규정은 사상의 표현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현실적인 위협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인데, 국가보안법, 특히 법 제7조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위 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

(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

국가보안법의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기본권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는 것이다.

(6) 평화통일조항에의 상충

국가보안법은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가 천명한 평화통일조항과 상충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과 상충되어 법질서 전체에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분단의 법제화로 통일정책에 장애를 주는 것이다.

다. 운용의 실태

국가보안법의 제정 이후,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맹위를 떨치던 기간이나 제5공화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가보안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 하는 점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직접 처벌을 당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변론해 온 변호인들로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국가보안법 운용의 실태는 정권에 따라 그때마다 서로 다른 점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특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통성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1) 국가보안법은 어느 정권에 있어서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대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서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처벌된 사건의 거의 전부는 반정부인사, 국내에 있어서 민주화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과 노동운동, 전교조활동, 빈민운동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들 및 소위 이념서적을 저술, 출판한 작가, 출판인 등이며, 6공화국에 들어서는 이에 다시 통일운동가, 민주문화운동을 주도하였던 화가, 평론가 등이 추가되었다. 인노투사건, 문익환목사사건, 서경원의원사건, 임수경씨사건, 홍성담씨사건, 서민련사건, 민자통사건, 자민통사건, 범민련사건, 삼민동맹사건, 서미련사건 등 국가보안법이 작용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성격 자체와 정부수립 이후의 각 정권들의 부도덕성과 반민주적, 반통일적 성격에서 유래할 뿐 아니라, 공안세력집단 자체의 상대적 독립성과 반민주적, 반통일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가보안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필요와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해석 적용되어 왔다(2중기준).

그리하여 평소에는 일반 서점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책자를 특정인이 소지한 경우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지목되어 구속기소되고, 북한을 방문하는 인사들 중 정부가 묵인하는 자는 처벌되지 않는 반면 다른 언론인이 북한 취재계획을 세운 것 만으로 처벌되는 등의 사례를 만들었다.

(3)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이 전반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고 처벌 규정에서 구성요건요소, 특히 처벌대상인 행위요소를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법 집행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백지형법의 형태를 취한 결과이다.

화가 신학철의 경우 그가 그린 그림 '모내기'에 그려진 초가집을 수사기관이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로 해석하고,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해석하여 구속기소하였다. 범민련사건과 김현장, 고현주부부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증거없이 유럽 민협과 일본의 민단체열 단체인 한통련을 수사기관이 반국가단체로 지목한 것만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죄로 구속기소되었다.

이것은 마치도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 입법의 영역을 침해하여 처벌규정에 "정부당국의 승인없이" 또는 "정부당국의 판단기준에 위배하여" 등의 구성요건을 추가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처사로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자체가 정치적 탄압임을 스스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의율하여 구속기소함에 있어 최후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집착하는 부분은 어휘의 유사성 내지는 동일성이다. 그 의율의 빈도가 가장 높은 이적행위(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표현물제작, 소지죄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검찰의 공소장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즉, 북한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연방제 주장, 남한을 미국에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라고 보는 북한의 견해에 유사한 정치경제학상의 신식민주국독점자본주의론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며, 평화협정체결과 불가침선언을 주장하는 것 역시 북한이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논지이다. 실로 국가보안법은 이와 같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이 그 자체의 존립을 보장하는 자기방어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수사기관이 어떠한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지목하고, 어떠한 인물을 그 구성원으로 지목하며, 어떠한 행위를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고 간주하고, 어떠한 표현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으로 기술하면 즉시 그 사람의 그 행위는 그때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의율되어 구속기소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되었다.

(4)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은 다만 법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에 의한 자의적 법집행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이적단체나 조직을 수사기관이 고문과 회유, 협박에 의하여 날조하고 이에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짜 맞추어 기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는 반민주적인 정권이 그 자체의 권력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또는 공안세력이 자기방어적인 목적에서, 공안사건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특성이 국가보안법의 불명확성 및 결과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형식법적 성격과 결합된 결과이다.

(5) 그러나 이와 같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법원에 돌아간다. 이와 같은 실태는 결국 수사기관의 무절제한 자의적 법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최후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가 자기의 본분을 포기하고 정권의 시너로 전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그대로 용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태도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의 근본이 있는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고(헌법 제103조), 따라서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사재판절차 및 증거법칙과 입증책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제적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심리 확정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 등 헌법상의 원칙에 충실하게 국가보안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범인가를 선언하기만 했더라면,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된 사건의 거의 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걸음 더 양보하여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최소한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해석 적용하기만 하였다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대부분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유신치하에서나 제5공화국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의 90%이상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그들은 모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 재야인사, 사회운동가, 노동운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노동운동가 등이었으며, 그들에 대한 피고사건의 내용은 그들이 독재타도, 미군철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 노동권보장 등을 주장하였거나 기껏해야 좌파적 경향의 시적이나 유인물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 또는 소지하거나 그러한 서적 등을 열독하고 이에 관하여 토론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덮어두고라도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해석, 적용하기만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중 무죄건수는 전무하다시피 희소하였다.

라. 통계로 본 운용실태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반공법은 1980. 12. 30. 폐지되었다.

연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국가보안법	23	16	17	15	93	17	31	43	10	31	41	35	34	13	40	22	41	67
반공법	13	65	13		3	2	5											
	6																	

공안사건, 특히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통계는 그 출처가 다양하나, 사법연감의 통계수치를 근거로 전두환정권(1980~1987)과 노태우정권(1988~1992) 및 김영삼정권(1993~1997)에 있어서의 공안사건에 관하여 적용법규별 연간 평균 기소인원수를 산출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전두환정권에 있어서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인원수는 구 반공법위반을 포함한 수치임).

연 도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노동관계법	화염병등의 처벌법	공안유 해하는 죄	합 계
1. 전두환정권	219.8 7	414. 87	5		58.5	698.2 4
2. 노태우정권	305.8	383. 2	165.2	158. 75	30.6	1011. 8
3. 김영삼정권	294.5	86.7 5	73.75	12.2 5	1.5	468.7 5
비율 (2/1)	139.0 %	92.4 %	330.4 %		52.3 %	144.9 %
비율 (3/2)	96.3 %	22.6 %	44.6 %	7.7%	4.9%	46.33 %
비율 (3/1)	133.9 %	20.9 %	147.5 %		2.5%	67.13 %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국사범 구속자중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5년간의 구속자수는 1956명으로서 전체 구속자중 46%에 달한다.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합계
구속자	115	389	284	494	674	1956

민가협 집계에 의하면, 김대중정부 출범후 1999. 2. 24.까지 1년간 국가보안법 구속자 통계는 총 413명이며, 그중 92.3%인 381명이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위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권 출범 1년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5공(1980년), 6공(1988년), 김영삼정권(1993년) 출범 1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국가보안법은 그 위력이 사라지거나 약화되기는 커녕 변함없이 견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건대, 첫째로 정권의 교체에 불구하고 공안세력은 견제하고 있으며, 공안세력은 그 정체성의 확인과 존재의 과시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자체생산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독자적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공안세력은 어느 정권 아래에서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존재를 과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공안사건을 만들어 내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 결과 김대중정부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정권의 교체와 관계 없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태도나 의식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권력에 대한 종속성은 다만 보신을 위하여 정권에 굴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구한 세월을 걸쳐 내면화되기에 까지 이르러 사법부의 구성원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과 엄격성

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반세기에 걸쳐 이 사회를 지배하여 온 냉전논리와 반공이데올로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좌파사상에 대한 공포를 일반화시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의 해악은 다만 그 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분위기 안에서 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들고 아무런 제약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론 및 대체입법론에 대한 비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나 또는 다른 법률로 대체하는 것, 심지어는 개정하는 것조차도 허용될 수 없다는 반대론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론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가. 대체입법론

(1) 과거에 평민당은 국가보안법에는 위헌소지와 법체계에 있어서의 모순 및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대체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989. 12. 4. 의안번호 754호로 박상천의원 등 70인의 발의로 "민주질서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후에 위 법안은 철회되고 민자당의 개정안에 동의하여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평민당(후에 신민당)은 위 법안의 제안이유로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에는 현재의 형법과 다른 형사특별법만으로는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허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보완장치없이 폐지되면 직접적으로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활동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형법의 간첩죄규정과 군사기밀보호법만으로는 북한이나 "적국 또는 적대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응하는데 미흡하다.

(2) 그러나 우선 "폭력에 호소하지 않는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활동"이란 결국 국가체제의 변혁을 위한 이론의 선전이라는 것이 되는데, 국가체제란 만고불변의 것이 아니므로 국가체제의 변혁을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사상과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이어서 처벌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처벌되어서도 안되는 부분이다.

다음, "적국 또는 적대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나, 간첩이란 그 개념 자체에 적국을 위한 첩보수집행위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제사회에 있어 모든 외국은 적국이 아니면 우방인 것이고, 우방을 위한 간첩이란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한 사실 및 그 외국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하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하면 충분한 것이다. 또한 만일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라면 그 행위가 다른 범조항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처벌하면 그만일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중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4조 제1

항 제2호가 있을 뿐인데, 위 조항은 형법 제98조(간첩)의 행위나 기타의 기밀에 관한 탐지, 수집, 누설, 전달 등의 행위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로서 한때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인 것으로 이것은 결국 형법 제102조 소정의 적국간주규정에 포함되는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또는 그 대체입법에 의해, "적국 또는 적대국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착각일 뿐이다. 만일 대체입법이 국가보안법도 처벌하지 않는 "우방에 대한 간첩행위"(그러한 것이 가능한지는 의문이지만)를 처벌하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개악일 뿐이다.

군사상의 기밀 외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법이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각호의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일반 국민은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형법 제127조가 따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은 형법상 간첩죄가 되는 경우 이외에 더 나아가 처벌할 필요가 없다. 정치적으로 악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거의 상정할 수 없다. 또 현재 대법원 판례는 북한은 간첩죄에 있어서의 적국으로 보고 있으므로 북한을 의식하여 위 조항을 둔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

(3) 그밖에 위 대체입법안의 핵심인 "민주질서위해죄"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대체입법안 제4조(민주질서위해의 죄)는,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 즉, "대한민국의 국가로서의 존재를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전을 침해할 목적",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 "허위의 사실을 조작", "적대적 활동을 선전",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등등의 조항은 현행 국가보안법과 동일하게 불명확할 뿐 아니라 그 규정형식이나 용어자체도 대응소이하다. 즉, 위 조항들은 그 개념의 정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대상의 포괄성과 규제기준의 다의성, 규제목적의 불명료성 때문에 그 자체 백지형법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하고 있으며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미군은 더 이상 주둔의 필요가 없고, 따라서 미군철수와 남북 불가침선언, 평화협정체결이 즉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현재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 신민당의 법안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가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국가 안전 침해, 허위의 사실, 적대국의 적대적 활동 등의 개념은 현재의 국가보안법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전혀 확정할 수 없는 개념들이며, 그 기준에 대한 합치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결성 및 가입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조문체제상 으로나 문언상으로 현재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대법원은 이미 현행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였고, 위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려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피고인 등이 위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에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는 바(대법원 90. 9. 11. 선고, 90도1333판결), 민주적기본질서의 폐기, 침해라는 요건이 별다른 제약요소가 될 수 없음을 별

써 분명하다.

위 법안 제5항은 학문, 예술의 연구나 역사의 기술(記述)에 목적을 두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해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학문, 예술, 역사의 연구나 기술이란 결국 그 연구 및 기술결과를 발표, 선전, 전파하여 동조자를 획득, 확장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여 국가사회의 현실을 개혁,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발표, 선전, 전파를 배제한 학문, 예술 등의 연구란 그 자체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학문, 예술, 역사의 연구와 그 발표, 전파, 선전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며, 발표와 전파 및 이에 대한 비판과 동조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학문, 예술의 연구와 발전이 가능한 것인데, 이 법안에 의하면 위 조항에 불구하고 혼자서 연구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표단계에서부터는 처벌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결국 위 법안은 학문, 예술의 연구나 역사의 기술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지난 오랜 세월동안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그 본업으로 삼아온 국가정보원(구 국가안전기획부, 그 이전에는 중앙정보부) 및 대공수사기관 등 공안세력이 온존하는 현실에서 대체입법이 사건 조작마저도 서슴지 않는 공안수사기관의 습관화된 인권침해를 제약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4) 따라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발상은 여전히 냉전논리와 좌파적 경향에 대한 불합리한 공포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뿐이고, 대체입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입법에 의해 국가보안법이 끼치는 해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국가보안법이 "단순한 사상의 표현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대한 해악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사상의 표현 그 자체"를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해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나.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논거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남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그 가장 유력한 논거로 삼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형법을 갖고 있으므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가상조다. ...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더라도 새정부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에서처럼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1998. 3. 11. 김대중대통령의 프랑스 계간지 '폴리티크 앵테내셔널'과의 인터뷰 기사)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선거공약이었으나, 북한이 남측을 준전시상태로 대하고 있고 잠수정과 공작원을 침투시키기도 이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쉽게 얘기할 수 없다."(1998. 9. 9.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 면담시의 발언)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동조해 한국의 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것은 무장해제하라는 것과 같다."(1998. 9. 10.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 면담시의 발언)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면 직접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1999. 3. 25.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국정보고회의 발언)

이상 인용한 것들이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나아가 대폭 개정마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이다.

그러나, 첫째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어서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와 학문,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그 본질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지해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결론인 것이므로, 북한의 형법내용이나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결정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나 태도 또는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를 찾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논리의 오류이다.

북한이 국내에 침투시키는 공작원 등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형법, 군형법 기타 다른 형사법규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만일 북한이 국내에 침투시키는 공작원을 형법이나 군형법만으로 처벌함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침투한 공작원”만을 특별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면 어떨까?

둘째로 “북한에 동조해 한국의 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국내의) 세력”이 있다면 이 역시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에 관한 죄, 군형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따라서 이 역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킬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세력을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의사표현의 단계로부터 미리 처벌하지 않을 경우 그 세력은 급성장하여 국가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신봉하지 않는 극좌파 공산주의자이거나 극우파 파시스트일 것이다.

셋째로 “폭력을 동원하지 않는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이란 그 자체 처벌의 가치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하여서도 안된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넷째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더라도 새정부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에서처럼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오로지 군사정권의 반민주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도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대한 무지와 한국의 현대사와 현실에 대한 무정견에서 나오는 단견일 뿐이다. 이미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정권의 비민주성과 부도덕성에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본업으로 삼아온 공안세력의 견제 등 정치사회의 구조 자체의 문제와 국가보안법 자체의 사상탄압법으로서의 성격 자체에 오히려 큰 원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모두 척결되지 않는 한 정권담당자와 소수의 상층집단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정부 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오히려 증가한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북한이 남한과의 협상에 있어 항상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선결문제로서 주장한다는 사실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킬 이유가 되는가? 이것은 쌍방의 자존심 싸움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의 존립근거로 삼는 것에 지나지 않아 소아병적인 발상일 뿐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존치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납득할만한 이성적인 논거를 기초로 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다만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즉흥적으로 도출한 비이성적 논거에

토대를 두고 있을 뿐인 것이다.

4. 결론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개정방안이나 대체입법안을 포함하여 다른 어떠한 방안도 국가보안법이 반세기동안 끼쳐온 심대한 해악을 근본에서부터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사상의 표현 자체”를 처벌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도 자체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권력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행위”가 아니라 “국가체제 또는 집권세력에 대한 위협성 내지 반대의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려 할 것이다.

무릇 국가 또는 사회는 그 구성원 개개인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체제는 그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자각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국가가 개인을 떠나서 존재한다는 사고는 곧 파시즘 또는 나치즘일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형사법 역시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과 안전의 보호장치인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에 한하여 그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국가나 사회에 대한 막연한 위협성이나 우려를 내세워 개인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하거나 개정하여 존속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산권이 와해 소멸하고 남한과 북한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국제정세 하에서, 더구나 남북한 역시 갈수록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현실과도 괴리되어 갈수록 법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정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중 형법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폐지하여 형법의 규율에 맡기고 그밖에 찬양, 고무 등의 죄(제7조)는 그 자체 사상, 양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침해조항이므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인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부분은 이미 시대적 요구에 뒤떨어진 부분이므로 이를 폐기하고 그 규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률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보완장치없이 전면 폐지한다면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이냐?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상의 추구와 표현 자체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리에 합치하는 것이며, 그것이 구체적인 사회질서 침해행위에 나아간 때에는 그에 대응하는 개개의 법규정에 의하여 규제하는 것 이상의 예방적 제재는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상의 표현이 허용되는 것만으로 국가안보에 허점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결국 냉전시대의 국가안보 우위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또한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저의를 호도하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국가보안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 끝 —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신앙인들

—천주교의 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 담긴 종교적 명분—

성 열
서강대 철학과 교수

- ◆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 보기
- ◆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 ◆ 예수의 운명과 국가보안법
- ◆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신앙상의 논거
- ◆ 마몬의 가면을 벗기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 보기

천주교는 서기 2000년을 종교상의 대회년(大禧年)으로 정하여 성년 맞이에 교회 안팎의 힘을 모으고 있다. 까마득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인들이 50년마다 농사짓던 땅을 놀리고 종들을 풀어주며 빛을 탕감해주고 원한을 서로 풀던 습속이 그리스도교에 전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성년에는 신앙과 삶을 쇄신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가 전세계 가톨릭교회의 표어가 되어 있다.

한국천주교의 북한문제 공식창구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이다. 이곳의 공식 발언은 보혁이 공존하는 한국 천주교의 정리된 입장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그런데 이 기관이 일찍이 한국천주교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2000년 대회년의 출발점은 (남북간의) 조건없는 용서와 화해"라고 천명하였다.(1996.12.1)

한국천주교는 해마다 6월이 오면 한국전쟁의 상처를 신앙의 힘으로 아물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6월 26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반세기 동안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우면서 불목하여 온 우리 민족사회가 참다운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한다. 벌써 십여년전에 <천주교 사회사목을 위한 의식조사>에서 천주교 응답자 75.6퍼센트가 "교회가 민족통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대답한 바 있었다. 한국 천주교의 기본입장은 "은 세계가 평화를 염원한다"는 교황의 당부대로 "평화는 용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용서와 사랑만이 평화의 강을 이루어 놓는다"(1994.6.26: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성명서)는 것이다.

3년전 강릉잠수함침투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적에도 북한선교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1996.12.1) "용서와 관용이 사라지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 화해하는 복음적 정신을 외면하는" 정국을 통탄하면서 남북한 당국에도, 가톨릭신자들에게도 "사랑과 용서의 문을 열고 대화와 화해의 길로 들어설 것"을 촉구하였다. "반성적인 경제난과 작년에 이어 계속된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사회를 인도주의적 차원에 서라도 조건없이 도와야 한다"고 천명하였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어려워질수록 끝없는 사랑으로 형제의

마음을 돌려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국방력이나 국가보안법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용서를 무기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응하자는 호소도 그 성명에 담겨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인간이야말로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 걸어야 하는 첫째가는 길이다. 그리스도 친히 따라 걸으신 길이며, 변함없이 강생과 구속의 신비 속을 거처가는 길이다"(인간의 구원자, 14항)고 하였다. 어느 법률이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유린한다면, 특히 사회의 약자들이나 그 약자들을 편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투옥하고 죽인다면 신앙인은 순교자다운 기개로 이 법에 저항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주지 않았을 때마다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라는 말씀대로, 무죄하면서도 현행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에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인간"을 살리고 구하는 길이 공산주의나 반공의 이데올로기를 신성시하고 투신하는 길이 아니다. 한반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관심사는 반공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이다. 요한 바오로 2세도 자본주의든 집단주의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고 촉진되는 한에서는, 교회가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교회의 사회교리는 자유 자본주의와 마르크스 집단주의 양편에 다같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사회적 관심 21항)고 분명하게 밝혔다. 교황은 80년대에 미국과 소련 "두 블럭 다 자재 안에 보통으로 말하는 제국주의, 아니면 일종의 신식민주의 형태로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사회적 관심, 22항).

또 교황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나누어진 세계는 죄의 구조에 종속된 세계일 수밖에 없다"(사회적 관심 36항)고 선언하였고 한국을 첫 번 방문하였을 적에 동서 이데올로기와 남북 빈부문제를 가장 비극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라고, "분열된 세계의 상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나는 우익이다. 너는 좌익이다."하는 말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본인이 죄스러운 이데올로기 구조에 예속되어 살고 있다는 자백처럼 들린다.

그래서 신앙인은 반세기 동안 이 땅을 분열시켜 온 좌우의 논리가 민족 번영을 찾는 화해와 통일 논리로 바뀌도록 노력한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반공주의자라고 자처할 적에는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반공주의자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자이기에 반공주의자인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자유자본주의와 마르크스 집단주의 사이에서" 내리는 선택이 아니고, 나자렛 사람 예수 앞에서 내리는 신앙의 결단밖에 없다. 현교황의 주장대로 "가난한 이들을 편드는 선택"(사회적 관심, 41항)밖에 없다. 종교인은 민족공동체나 인간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울 권리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는 당대 사회에서 정치적 반란자로서 처형을 당하였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두 세력, 즉 외세였던 로마 제국과 그 외세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향유하던 대제관과 바리사이파에 의해서 제거되었음이 확실하다.

예수의 운명과 국가보안법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심정적으로 국가보안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그 까닭은 그들이 구세주로 받드는 예수가 당대에 국가보안을 명분으로 사형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법률이 나오

면 일단 주님의 억울하고 무죄한 죽음을 떠올리면서 또다시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의구의 시선을 돌린다.

성서를 보면 예수가 죽은지 나흘이 넘어 장사까지 치룬 라자로를 되살려 동굴무덤에서 불러낸 기적 이야기가 나온다. 이 소문은 삼시간에 유다지방에 짝 퍼졌다. 이 엄청난 소문이 대제관들과 바리사이파들의 귀에 들어가자 예루살렘에서는 즉각 최고의회가 소집된다. "이 사람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적이 의회 원로들에게 나자렛사람 예수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게 만들기는커녕,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해괴한 결론을 끌어낸 것이다. 최고의회 의장을 겸하던 대제관 가야파의 발언은 더 기막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더 이롭다는 것도 헤아리지 못하는군요." 다른 죄가 없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예수는 죽여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요한 복음은 이 대목을 이렇게 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대제관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아는 자는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요한 11.45-57) 신고 않는 자는 불고지죄로 처벌받았다. "그래서 대제관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의 기적에 당대의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사형을 결정한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에서 하느님 뜻을 찾는 성직자 대제관들이요 오로지 하느님 계명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평신도 지도자 바리사이들이었다! 그런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 천주교신자들은 한국사회의 남북화해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느님과 민족앞에 죄짓는 일처럼 느껴져 이 법을 철폐하기로 나섰다.

지난 7월 12일 결성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모임>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천주교가 국가보안법폐지에 발벗고 나선 데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신앙상의 논거

첫째로, 불법한 입법자가 불법하게 만든 법률은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현행국가보안법은 1980년 12월 31일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관이 만든 법으로, 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씨가 그해 5월 18일 쿠데타로 헌법을 파괴한 후에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행시킨 위헌기관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1997년 반란 및 내란목적 살인을 저지른 집단으로 역사적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반란집단이 불법으로 급조한 입법기관이 만든 이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5.18 군사반란을 편드는 것이고, 무고한 광주시민들의 죽음을 두고 하느님 앞에서 "그들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외쳐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말은 천주교신자에게 아무 설득력이 없다. 그들은 "서양 오랑캐들이 들여온 샅된 가르침을 신봉하지 말라!"는 국법과 왕명을 어기고 천주교를 믿다가 목숨을 잃은 3만 명의 순교선열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에서 처음 한 세기 동안 천주교는 "사학(邪學)"이라고 불렸다. 실정법과 양심법의 대립에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양심을 지켜 온 것이 2천년 그리스도교의 역사이다.

둘째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현대 유람선이 금강산을 오가며 남한이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식량원조를 보내는 마당에,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거나 극구 반대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은 없다. 천주교내에도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추진하는, 북한선교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고, 레지오 마리아니 푸른군단이니 다락방이니 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단체도 많다. 파티마 성모의 메시지도 러시아가 회개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었고 그 기도대로 러시아 스스로 현실사회주의를 포기하였

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면서, 전세계가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조선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라고 단정하고, 북한과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고 있다. 북한을 붉은 악마같은 반국가단체라고 욕하고 증오하면서 북한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그들과 화해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얼마나 신앙에 어긋나는지 천주교신자들은 잘 알고 있다.

셋째로, 38선의 분단을 치유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다. 헌법(제 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기해 놓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무력과 전쟁에 의한 북진통일 이외에 다른 선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7.4성명이나 남북한 정부의 모든 외교문서는 연방제 형태의 통일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에게는 적화통일이나 북진통일 중의 하나가 이루어질 것처럼 오도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목표는 마치 적화통일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국민에게서 통일에의 의지를 꺾어 버리고 희망을 좌초시키는 데에 있지 않나 의심받는다. 평화의 사도로서 전쟁을 증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으로 북진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이 법률이 남북의 분단을 영속화하는 법제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 법률 폐지에 앞장선다.

남북한 어느 쪽이든 "긴장과 대립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감정적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켜 나갈다면, 결코 민족사회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단죄되지 않을 수 없다"(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 1996.12.1 성명)고 천주교는 선언한 바 있다. 한반도라는 공간은 증오에 찬 범죄의 공간이거나 아니면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는 구원의 공간이 된다. 남북분단을 영구화할만큼 분열을 조장하고, 공산주의자라면 모조리 섬멸하겠다는 증오는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고 악마에게서 오는 까닭이다.

넷째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형벌 법규는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한다. 명료하지 아니한 것은 용도가 의심스러운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고만 규정할 뿐,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이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7조에서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 역시 지극히 애매모호하여 아무에게나 씌울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천주교 주교단은 일찍이(1982.12.5: 인권주일 담화문)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과 처단으로 국사범에 대한 인식에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관제 공산주의자가 생기는" 것과 그 무렵 "신앙공동체 활동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가 한바 있다.

북한으로부터 파송된 간첩도 아니고, 더구나 본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치는 노동자들, 군부독재를 규탄하는 학생들, 쿠데타와 인권유린을 비판하는 지식인들과 성직자들을 군사정권이 국가보안법에 걸어 처벌해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세월 이 법률로 남파간첩이나 공산당원을 붙잡아서 처벌한 실적은 미미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집단과 운동을 "반국가단체"라는 모호한 죄목으로 걸어놓고 양심범이 철창에 갇히다보니 전세계 지식인들한테서 우리나라가 정치적 미개국으로 조롱받고 있다. 상식있는 사람치고, 국가보안법이 온존하는 한, 남북간에 별의별 문서합의와 고위층회담이 있어도, 남한 정부의 통일의지를 믿지 않을 것이다.

미문의 가면을 벗기면서

"엄연히 남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공산당이 38선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법률을 폐지하여 어찌

자는 말이냐?" "북한에도 사회안전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말로 들린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보다 더 넘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마태 5.20)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이 빨은 이빨로, 눈은 눈으로 갚겠지만, 신앙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한다. 북한선교위원회가 "용서를 무기로 하여" 북한사회에 맞서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배경이 여기 있다.

종교가 말살되었다는 북한과 크리스천이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고 자랑하는 남한은,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가난한 약자를 더 돌보느냐로 우열을 가려야지, 누가 더 악질적이냐로 승부를 걸어서는 안된다. "공산당들은 제 부모도 당에 고발하는 패륜아란다."고 가르치는 대한민국에 남편이나 부모, 스승과 친구를 빨갱이로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처벌하는 반인륜 법률이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다시 말하거니와 예수는 당대 사회에서 정치적 반란자로서 처형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성경에서 읽은 신앙인들은, 예수가 무죄함을 알고서도 유대인 정치권의 압력에 못이겨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대답하여 "그의 피는 우리의 우리 자식들이 감당할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말도 기억한다. (마태 27.24-25) 그들의 장담은 30년도 못되어 로마군대의 예루살렘 함락과 전시민의 학살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해방후에 이남에서만도 제주 4.3 사태, 여순사태, 대구사태로 이어지는 엄청난 동족 학살, 저 무죄한 죽음들의 피값이 6.25라는 전쟁의 참화로 남북한은 민족의 머리 위에 쏟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종교적 해석을 한다.

기원전 5세기,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던 예제키엘 예언자는 어느 날밤에 하느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성전을 버리고 떠나가는 장면을 보았고 며칠 후에 수도가 적군의 손에 떨어짐을 목격한다.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들, 가난하고 힘없고 무죄한 사람들이 어떤 악법에 의해서 짓밟히고 희생당하는 땅에서는 국민의 마음이 떠난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영광도 떠나버린다. 종교인들은 거기서 전쟁의 참화와 한 민족의 멸망을 예견하고 공포에 떨게 된다. 신앙인은 "북괴 김일성의 남침"이니 "미국의 핵우산"이니 하는 것 말고도 하느님도 계심을 믿고 그분의 정의로운 손길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다.

민족화해와 북한선교를 염원하는 천주교는 그 신자들이 필히 갖추어야 할 통일영성(統一靈性)으로서, 아마도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되는, 중요에 찬 반공(反共)을 극복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반공이 자칫 하면 우상숭배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하느님보다 앞세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공산주의자들을 무신론자라고, 종교자유를 안 준다고, 사유재산과 자유를 빼앗는다고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도들에게는, 그 본심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을 안전하게 보전하려는 욕심, 못 가진 자들과 약자들로부터 기득권을 보호하는 폭력에 있지 않는지 하느님 앞에서 살피도록 교회는 간곡하게 권유한다.

"내 주먹에 권 것은 죽어도 내놓지 않겠다"는 마음씨를 이룸붙여 예수는 "마몬"이라고 불렀다. 주먹에 권 것 나눠먹으라고 말해오는 자라면 그가 노동자든 학생이든 지식인, 심지어 신부, 주교든 상관없이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욕하거나, 저사람들이 붙잡혀들어가고 퇴학당하거나 해직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한반도 반세기 동안 마몬이 남한사회에 뒤집어씌운 국가보안법이라는 탈을 벗어던져야겠다고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인류 역사상 국가보안법의 최초 희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 끝 —

의견서 1

권오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연대 대

국가보안법은 겉으로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내세웠지만 반공 반복의 분단 고착화와 함께 정치적 반대 세력 민족적 양심세력 통일운동과 진보세력을 탄압하며 정권 안보에 악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의 뼈대는 말할 것도 없이 죄의 규정과 형벌 조항들이다. 보통사람의 일상적 상식적 행위도 이 법을 통해서 들여다 보면 위반 혐의로 둔갑되었다. 이 법의 적용은 바로 양심수 인신 구속과 직결되고 있었다. 이제 국보법에 의한 구속상황을 통해 이 법이 정치, 사회, 문화 등 영역에서 어떤 규제역할을 했고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사회진보운동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6.25 전쟁이전까지는 전쟁으로 자료가 소실되었거나 행정 미비 등으로 통계자료가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단편적 자료에만 따르다해도 국보법이 제정된 다음 해 1949년 한해 동안만에도 이 법으로 입건, 또는 피검된 수가 118,621명이나 되고 같은 해,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1949년 5월 남포당의 프락치라며 국회의장 김약수 의원을 비롯한 노일환, 이문원 의원 등 13명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한 소장파 의원들이었다. 또한 1차 국보법 개정에서 '보도구급', '보도소' 설치 등에 따른 좌익사범에게 강제 가입케 했던 300,000 '보도연맹' 맹원 중 상당수가 6.25 전쟁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학살당하기도 했다. (말 1988년 12월호)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11.25까지 '비상사태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대통령 긴급 명령 1호 1950.6.25)'과 국가보안법으로 867명이 사형선고를 받는 기록이 있으며(동아일보 50.11.25) 전쟁중 '부역자'로 처리된 550,915명이 어느 정도 처벌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으나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이 때에는 전쟁 부역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한 예로 '국제공산당사건', '전국혁신지도위원회 사건' 등이 있다.

1958년-61년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받는 사람은 593명이고 사형선고만도 53명이었다. (동아춘추 1961.1월호) 1958. '진보당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한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봉암의 간첩죄를 무죄 선고하고 다른 혐의로만 5년을 선고했으며, 다른 진보당 간부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정치논리에 따라 진보당은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 해산되고 조봉암은 국보법 1조 1항등을 적용시켜 1959.7.30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자 7.31일 사형 집행되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4.19혁명 후 사회진보운동과 민족통일운동을 활발하게 해 오던 혁신계 정당 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특소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961.6.22)하면서 제6조에 '특수반국가행위죄'를 두어 국가보안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혁신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탄압을 하였다. 중앙사회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등 정당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교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맹 등 사회단체와 민족일보사 등 언론기관을 해체, 폐간시키면서 883건이 입건되고, 191명을 기소했으며 조용수 민족일보사장, 최백근 중앙사회당 조직위원회 조직부장 등을 사형집행하였다.

1961-80년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1968명과 4167명이었다. 이 기간 언론 활동 탄압과 필화사건으로 MBC 사장 황용주씨의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1964년) 남정현의 소설 '분지'(1965년) 김지하의 담시 '오적'(1970) 한승헌의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조사'(1975년) 이영희의 '8억인과의 대화'(1977년) 등이 국보법상 찬양, 고무죄 등을 적용받아 구속되었다. 중요 사건으로는 동백림 사건(1967년)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 인민혁명당 사건(1974년) 남민선준비위원회 사건(1979년)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도예종씨등 8명이 대법원 확정 8시간만에 사형집행되는 가장 잔인한 사법 살인이 자행되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으로 정권을 잡은 5공, 6공 기간과 그 군사정권에서 태어난 이른바 문민정권 기간인 1980-96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4196명(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이었다. 이 기간은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남북유엔동시가입, 남북합의서 채택 등이 있었던 민족 민주 진영의 통일투쟁이 활발했던만큼 구속자가 어느 때보다 많았던 시기이다. 중요사건을 보면 학생조직사건으로 구국학생연맹 사건(1968년), 반제동맹사건(1986년), 전대협사건(1990-91-92), 각 대학 자주대오 사건, 각 대학 활동가조직 사건 등이 있고 반미활동으로 부산 미문화원방화(1982년), 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1987년), 노동사회운동으로 전민노련 사건(1981년), 서노련 사건(1986년), 남노련 사건(1987년), 인민노련 사건(1989년), 노동청년회 사건(1995년)이 있고, 청년운동으로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1987년), 민청련 사건(1985년), 정치활동 관련으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1980년), 진보정치세력으로 제헌의회 사건(1987년), 사노맹 사건(1990-93년), 국제사회주의자 사건(1995년), 통일운동 관련으로는 구미유학생 사건(1985년), 문익환, 서경원 방북사건(1989년), 민자통 사건(1989년), 평측관련 사건(1989년), 범민족대회 사건(1989.91년), 범민련 사건(1991.92.94-96년), 범청학련통일축전 사건(1996년), 자민통 사건(1990년) 등이 있었고 그의 조직사건으로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1992-94년), 구국전위 사건(1994년), 그리고 수많은 재일교포간첩조작사건들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1인 1당 독재, 군사독재에서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문민정권', '국민의 정부'라 자처하는 체제에서도 그 위력을 제한없이 발휘하고 있다. '문민'을 내세운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4263명이나 되는 양심수를 구속하였고 그 가운데 46%인 1974명이 국가보안법 적용되었다.(민가협 조사) 이렇게 많은 양심수를 잡아들이는 데는 민족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도 의지도 없는, 시대역행적인 대북고립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고, 그래서 통일운동 자체를 적대시하며 한총련을 이적으로 규정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 양심수 없는 사회를 바꿨던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집권 1년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문민정권 같은 기간 구속 수의 4배에 이르고 있다. 1999.9.2 현재 모두 1096명의 양심수가 구속되고, 55%인 61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민가협 조사) '국민의 정부' 역시 한총련을 이적으로 규정하고 무더기로 청년 학생들을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간기구의 국가보안법 남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기부가 지난 97년 9월, 일본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후 공작금을 받아 국내에서 이적 활동을 했으며 배운주(30)씨 등 동아대 졸업생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간첩 등)로 구속했던 이른바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단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데서 드러나듯이 공간기구와 국가보안법은 서로의 생존 양식 관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든 해도 양심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립목적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존치할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어졌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과 북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서 상대가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선언했고, 국제연합(UN)에 함께 가입함으로써(1991.9.24) 법적으로 확인했다. 그 뿐만 아니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1992.2.19)시켜 놓았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서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차례 남북합의서 가동을 말했다.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수 많은 사람이 북쪽에 다녀오며 경제, 문화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자진 지원, 금품수수,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제공을 사실상 서로 해오고 있다. 누구에게는 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면죄가 될 수는 없다. 법의 실효성은 시행에서의 형평성에 좌우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국제연합'(UN)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등 여러 국제인권협약에 가맹(1990.6.13-7.10 효력발생)했다. 이러한 인권규약은 도덕적 권위와 법적 구속력까지 갖고 있다. 가맹국가는 반드시 협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다. 지난해 10.20 유엔 인권이사회가 재미 유학생 박태훈씨가 제소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인권규약 19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 박씨에게 실질적 구제조치와 결과를 이사회에 보내줄 것을 요구한 예에서도 국제협약의 규제력을 실감케 하고 있다.

현집권당인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민주질서수호법'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자민련과의 정책조율에서 현 국보법을 존치하되 독소조항을 없애겠다고 대선에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되거나 일부조항을 없애는 부분개정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인권침해와 민주발전을 저해하고 자주적 평화 통일에 장애가 되고,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악용되어 온 반민주악법이기엔 지체없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 끝 —

곽한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집행위

1.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한 교회의 노력

교회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준열한 가치판단을 내려 왔다.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수선을 추구하는 악의 힘이 절대 다수 선의 힘을 억압, 압도함으로써 정치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불균형과 사람 사이의 분열이 심화되는 경우인데, 이는 사랑과 일치 정신에 반대되는 것으로 교회는 선한 의지의 표상으로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간청하여야 한다.

사회가 명백히 정의의 실현이 거부되고 있는 가운데 강압에 의하여 '회칠한 무덤처럼' 강요된 침묵이 지배하여 사람들이 그 잘못을 시정케 할 수 있는 의욕을 포기하거나 상실하고 있을 때 교회는 복음의 빛으로 현실을 해명해 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현실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불의의 희생이 되어서도 침묵하고 있는 이웃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입장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민중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하는 동반자요 그 보조자여야 하고, 그 방법은 사랑의 정신이며 그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어야 한다.

2. 법과 인권 문제

인권문제는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엄과 기본권이 특정 세력의 특수선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상충할 때 발생한다. 먼저 현실적인 인권유린의 현상이 발생하고 다음에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반화하며 마침내는 실정법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에 이르게 된다.

교회는 법이 올바른 이성과 합치될 때에만, 따라서 영원불변한 하느님의 법과 일치할 때에만 비로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법은 형벌이 두려워 지켜져야 한다기 보다는 인간의 양심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양심과 인격을 존중할 때 비로소 존속될 수 있는 이유를 갖는다.

정치체제의 성립과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나, 집권자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보복이 정치범 혹은 양심범의 형태로 나타난다. 양심범 혹은 정치범은 정부의 안일과 부패를 예방하는 소규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교회는 양심범에 관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며, 양심범들에 대한 박해가 양심자체에 대한 박해로 될 수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 피고인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인신구속의 남용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3. 민족 통일과 교회의 역할

분단은 본디 한 생명체인 국토와 민족이 갈라져 서로 싸우는 반생명 현상이다. 이로부터 오해와 분쟁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민족의 에너지는 크게 낭비되고 있다. 갈라진 민족을 본래의 하나로 결합시키는 통일 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만유를 통일시키고 일치시키는 하느님은 지금도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역사(役事) 하신다. 교회는 평화적 통일을 기도하며, 또 한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고 확인되는 방향으로, 즉 민주주의적 통일을 희망한다. 민주주의 전통을 확고하게 수립하는 일이야말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첩경이라고 본다.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고의 법칙은 민족들간에 명실공히 참된 평화가 군비의 균형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상호 신용에 의해서만 확고하게 성립될 수 있다. 다른 법칙은 여기에 종속될 뿐이다. 교회는 정의와 평화의 통일의 목적인 동시에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4. 천주교의 의법 철폐 운동 근거 - <교회의 사명에 참여>

교회창립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전세계에 퍼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케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전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활동을 모두 '사도직'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이 사도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천한다. 사실, 그리스도 신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아 있는 몸의 모든 지체가 그저 단순한 피동적이지 않고, 모름지기 몸의 생명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몸 전체는 "각 지체가 그 분수에 따라 활동하는 대로 성장하는 것이다."(에페 4, 16) 또한 이 몸의 결합과, 지체들 상호간의 관계는 극히 밀접한 것이어서(에페 4, 16), 자기 능력대로 교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지체는 교회를 위해서나 또 그 자신을 위해서나 아무데도 쓸데없는 지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그 사명은 오직 하나뿐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리스도 한테 받았다. 평신도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나름대로 완수하고 있다. 평신도들은 복음 선포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활동으로써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명백한 증인이 되고 인간 구원에 이바지하므로, 이런 활동으로써 그들은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속에 살면서 세속 일에 파묻혀 있는 것이 평신도의 특징이므로,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불타며, 누룩같이 되어, 세속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상의 인용문의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중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2장이 전문이다. 여기서 교회 창립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전세계에 퍼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참여케 하며 그들을 통하여 전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의 활동을 사도직이라 부르고 있다. 즉 사도직이란 교회 창립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자들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직은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가리킨다. 또한 평신도는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에서 받는다. 평신도는 성체성사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가 되고, 견진 성사로 성령의 힘을 받아 강해졌으며, 주님으로부터 사도직 수행의 사명을 받았다(평신도 사도직 교령 3장)고 공의회 문헌에서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악법 폐지 운동의 논거가 되고 있는 것은 2항에서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예언자직 활동을 통해서 실현해 낼 수 있다.

예언자직 활동은 현세 질서가 교회의 복음 정신에 입각하여 해석했을 때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시정하고 복음 정신에 입각하여 현세 질서로 만드는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교회내의 추진했던 성직자와 평신도의 사회정의 운동은 모두 예언자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제1회 인권주일 담화문 (1982. 12. 5)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와 반공법이 정치 보복과 탄압의 사례를 지켜보아 왔다.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과 처단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관세 공산주의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최근에 **신앙 공동체 활동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 구성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고,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6. 타 법규와의 중복성

국가보안법	남북교류 협력법
▲ 6조 - 잠입, 탈출	▲ 9조 - 왕래
▲ 5조 - 자진지원, 금품수수 ▲ 9조 - 편의제공	▲ 12조 - 교역 ▲ 13조 - 반입, 반출
▲ 7조 - 찬양, 고무 ▲ 8조 - 회합, 통신	▲ 17조 이하 - 협력 사업

국가보안법	형사 처벌 법규
▲ 3조 -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 음모	▲ 형법 38조 - 내란죄의 예비, 음모 ▲ 형법 114조 - 범죄단체 조직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 범죄단체 조직화
▲ 4조 - 목적 수행	▲ 형법상의 각 조에 정한 항과 법정형의 가중하고 있는 내용
▲ 5조 - 자진지원, 금품 수수	▲ 형법상의 각 죄의 공범 규정으로 처벌 가능
▲ 6조 - 잠입, 탈출	▲ 형법 92조 - 의환죄 ▲ 형법 98조 - 간첩죄의 예비, 음모
▲ 8조 - 회합, 통신 ▲ 9조 - 편의제공	▲ 공범유형으로 처벌, 독립된 규정의 필요성이 없음
▲ 10조 - 불고지	▲ 형법의 범인 은닉죄로 처벌 가능

7.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김순권 박사

8월초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큰비가 내려 개성과 해주 지역 농사에 피해가 심각하였다. 하지만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의 황해북도 일대의 옥수수에는 이번 비가 '가물 속의 단비' 역할도 단단히 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요즘 개마고원 일대 북한 북부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감자 재배가 장려되고 있어 식량난의 부분적 해소와 고른 영양소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감자는 80%가 수분이고, 대량생산이 이루어져도 보관과 수송이 쉽지 않은 결점이 있는데 이것도 남쪽이 도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방북 중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옥수수 생육을 살피는 동시에 고온 다습한 기후 속에서 창궐하는 병충해를 거뜬하게 이겨내는 우수 품종 20여개를 선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폭우 가운데에도 북한 당국자들의 찬탄을 받으며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저를 인도하는 신의 가호였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에 보답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동포의 고통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이었다.

(옥수수 박사 김순권 교수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토양에 알맞은 옥수수를 개발하고 그 옥수수를 심어서 북한의 식량을 자급자족시키기 위하여 북한 옥수수 심기 범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모금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8. 국가보안법의 역사성과 효력 상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 위반사례를 조사하면 독립운동사를 정리 할 수 있고 해방후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를 정리하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신문사실을 접한 바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반 민주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보다는 정권유지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금기시 되었다. 그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논의가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해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기 보다 사안이 발생할 때나 광복절을 전후하여 통일운동과 결합하여 추진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세력은 겸허하게 자신들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올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란은 지난 3월 정치권으로부터 나왔다. 이는 국제 엠네스티나 유엔 인권위의 외교적 압력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 때문이다. 물론 시민·사회운동 단체들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법률가나 양심 있는 지식인 사회운동 단체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보수집단이 아닌 극우세력과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공안세력 뿐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답변을 해야 한다. 20세기의 마지막 악법을 폐지시키는데 의원들은 시대정신에 응답을 해야 한다. 의원 개인은 국민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이다. 자신이 극우세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의원입법이나 소속정당에서 폐지안을 제출하는 자주적인 활동이 요청된다.

천주교 연대는 사회사목에 관심 있는 평신도·수도자·성직자가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과 부분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교구 주교님도 고문으로 천주교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천주교 연대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양한 편차(폐지운동 단체·대표적인 악법 조항 폐지운동 단체 등)를 극복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교회문헌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집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
- 끝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워크숍

◎주제 1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과 관련된 정세인식과 통일환경

■ 발제 : 서동만 교수(외교안보연구원)

◎주제 2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 백승현 변호사(민변 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

◆ 일시 : 1999년 7월 23일~24일

◆ 장소 : 대전 가톨릭교육회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과 그 한계

— 『통일시론』 1999년 여름호(통권 제3호) 게재 예정 —

서동만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1. 머리말

남북한 사이에 고위급 정치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개가라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거의 이렇다 할 진전이 보이지 않던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 냉전 붕괴 이래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이제 21세기를 맞이 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남북 대화에 거는 기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 수 없다.

남북대화는 오랜 동안 단절되어 있었으므로, 개척된다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커다란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제껏 되풀이되어 왔듯이 남북대화는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별 성과가 없을 때에는 그에 따른 실망도 크지 않을 수 없다. 남북대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해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는 그 자체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양측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남북한 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충족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관계 개선이 부진한 데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떠넘기지만 해서는 남북한 관계의 답보상태는 타개할 수 없다. 남북한 시로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것이 남북한 각각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점검해 보는 것은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각각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역지사지'의 시각이 필수적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측에 이러한 시각이 절실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어느 쪽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려 할 경우, 자기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려는 태도를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려는 자세가 전제가 된다. 진정한 남북대화는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관계는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순수하게 남북한 관계로 한정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만,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된 주변 4강이 개재된 국제적 측면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4자회담이나 주한 미군 문제처럼 남북한 관계와 따로 떼어놓기 어려운 쟁점도 있다.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국제적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각각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건들 이외에도 남북한 각각이 처한 내적 조건의 문제도 있다. 남북한 체제 내부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체제 역량에서 열세에 처한 북한 입장에서는 내적 조건이야말로 남북한 관계를 제약하는 가장 근본적인 측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남북 관계를 제약하거나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따져볼 때, 현 시점에서 남북대화가 내포하는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

북한은 시기에 따라 남한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해 왔지만, 최근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제안하면서 회담 성사를 위해 남한측이 충족시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로 북한에 대한 외세와의 공조 파기와 합동군사훈련의 중지, 둘째로 국가보안법의 철폐, 셋째로 범민련, 한총련 등 통일운동 단체, 인사들의 활동 자유 보장을 내걸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과거와는 달리 주한 미군 철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건이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위해 이러한 요구가 얼마나 바람직한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한측에서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진다.

우선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는 이미 남한 정부에서 최소한 유엔 기준에 맞추어 철폐 내지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이상, 전혀 충족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다. 물론 남한 일각에는 북한측도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해야 이에 상응한 조치로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집권당인 국민회의도 야당 시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체 입법으로서 '민주질서기본법'을 제정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남한의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함을 말해 주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남북한이 채택하고 남한이 적극적으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법률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에 배치되는 일이다. 이제 새로운 대북 관계를 설정하려는 시점에서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남한에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실제 남북한간에 교류, 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보안법 자체도 형해화되어 가는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법적 현실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이 국가보안법의 상위규범이 되어 가고 있다.

다음으로 한총련, 범민련 문제도 남한에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가 출범하여 이들 단체에 대한 대화와 실득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북한측이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와만 대화를 추진하고, 나아가 정부와의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 이 쟁점을 이용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뿐 아니라 여기에는 북한측 통일정책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단체를 현실적으로 남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걸려 있다.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남한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주장이 아니라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란 차원에서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단체들의 북한과의 접촉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목적의 순수성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대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운동 단체의 자유 보장 문제는 북한의 요구 이전에 일차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 관계에 걸려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해 남한의 취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경직된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남한 사회, 체제가

갖는 다원적이고 시민적인 성격은 북한 체제에 대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 의연한 남북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측의 전통적인 제안인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를 포함, 어떠한 형식의 남북 대화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먼저 남한 체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남북한 관계 개선이나 장기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남한이 '해계모니'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의 명시적인 요구보다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구이다. 그것은 식량, 비료 제공 등 예에서 나타나듯이 경제 지원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외부로부터의 경제 원조이다. 이미 남북 교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는 경제 협력 내지 경제 지원이 되고 있다. 남한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북한을 이어주는 가장 확실한 끈도 경제 지원이다. 대체로 현재 남북한 관계는 민간, 정부 할 것 없이 경제 지원에 비례하여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위에서 들은 북한의 명시적인 요구 조건은 명분용이란 측면도 강하며, 앞으로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고리로서 경제지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첫째 조건인 외세와의 공조 파기, 합동군사훈련 중지도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뢰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남북한 관계를 가로막는 절대적 장애일 수는 없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남한 측이 북한측 요구를 실제로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외세와의 공조 파기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는 남한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국제적인 차원이 개재된 복합적인 사안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측이 주한 미군 철수를 조건에서 뺐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합동군사훈련 중지란 주한 미군의 철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지위 내지 성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주한 미군을 북한에 적대하는 군사력에서 최소한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존재로 전환하라는 요구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지위 변경을 요구하며 기존의 주한 미군 철수에서 용인하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고 언론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일부에서 표명된 우려는, 이러한 전환이 사실상의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소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며, 북한측의 숨은 의도는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이 가시화되어 남북한 간 신뢰관계가 확립되는 단계에서 북한 군사력의 위협 여부와 함께 주한 미군의 변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런데 북한측이 몇 차례에 걸쳐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흘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둘러싸고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위협을 느낌에 따라 오히려 그 완충 역할 및 생존에 대한 보장자로서 주한 미군 주둔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측은, 현재의 정전체제하에서는 주한 미군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평화유지군'과 같은 존재로서 그 주둔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어떻든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주한 미군을 둘러싼 합의는 빠뜨리고 넘어 갈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 내에서 공식적인 입장 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통일 과정은 물론 그 이후의 주둔 여부나 그 역할 및 성격 등을 포함하여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금기시하지 말고, 광범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측은 한국전쟁 이래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치-군사적 현안을 우선적으로 타개할 것을 주장해 왔다. 북한측이 이러한 주장을 완화시켜 남한측과 타협한 것이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비정치-군사적인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관계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남한측 요구와 정치-군사적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타결한다는 북한측 요구가 타협을 본 결과이다. 다만 북한측은 기본합의서를 통하여 남북한간에는 불가침 선언이 이루어졌으므로, 북미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정치-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북한측의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남한측은 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어디까지나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미평화협정이라 남한측을 미 괴뢰로 낙인찍어 휴전체제 종식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대화를 회피하기 위한 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북한이 제의하는 남북한,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에 대해서도 남한은 어디까지나 들러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자회담은 중국이 한국전쟁의 역사적 당사자라는 사실 뿐 아니라,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 중이 이를 인정하는 이른바 '2+2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한국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제안이었다.

그러나 남한측을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측 주장도 무리이지만, 미국을 도와 시하고 남한만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온 기존의 남한측 입장도 현실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주한 미군은 법적으로는 한국전쟁이후 새로이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주한 미군이 엄연히 북한과 대치하는 군사력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평화조약, 남한이 요구하는 남북한평화조약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타협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회담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3. 남한이 요구하는 조건

남한측은 북한측과 달리 남북대화에 보다 적극적이며, 무조건 대화의 개시를 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측이 북한측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남한측은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비록 이를 완화시켜 신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남한측은 현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남한측이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사안별 우선 순위와 템포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남한측이 북한측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산가족 문제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한측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관련되는 사안이지만, 북한측 입장에서는 체제의 근간에 관련되는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북한측의 체제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는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이란 경로를 통해 실현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별도로 협의될 수도 있으며, 현재 남북한간에 회담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남한 정부측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민간단체들도 상당수가 이러한 방침에 동의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광범한 국민적 합의가 성립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사안 모두 북한에게는 체제 내부 단속과 관련하여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남한측이 북한측에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성급하게 성과를 거두려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신경을 쓰며 북한측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한측이 북한측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대남 적대 노선을 포기하고 남한 체제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지하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요구는 남북 대치상태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시키는 상관성이 달려 있는 문제로서 이 역시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이 점이 명기되어 있으나, 북한측이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북한 체제의 유지란 측면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 노선은 남북한 체제 역량의 격차와 남한 사회의 민주적 성숙으로 남한 내에서 거의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성급하게 해결하기보다는 남한측이 자신감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분야이다.

대체로 남북한 각각의 상대방에 대한 요구 조건이란 측면에서 볼 때, 남한측이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란 극히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남한 체제 역량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측에 요구되는 자세는 어디까지나 장기적 관점에서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액면 그대로는 관철되기 힘든 것임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를 신중적으로 적용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원칙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4. 남북한 각각의 내적 조건

남북한 각각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주관적 요구 조건 외에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각각이 처한 객관적 내부 조건이다. 우선 남한측은 현 상태에서 남북 대화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남북 대화가 진전된다고 해서 체제 생존에 크게 위협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이미 선거를 통한 정권 창출이 두 차례 있었으며,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도 실현되었다. 신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펼 수 있는 내적 조건이란 바로 민주화의 진전에 있다. 이제 과거처럼 대북 정책을 정권 유지에 악용하는 것은 힘들어지고 있으며, 남북한 긴장 관계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줄어들고 있다. 남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되면 될수록 이러한 방향은 더욱 뿌리깊이 정착될 것이다.

물론 남한 체제에도 냉전의 구조적 유산이 남아 있고,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국내적 측면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 들은 북한이 남한에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일부는 남한 사회의 냉전 유산이란 일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과감하게 청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 체제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정치-군사적으로 대외적 독자성을 증대시켜 가는 일이다. 일정 기간 한미 연합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가급적 한국군의 독자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 최소한 전시작전지휘권 정도는 미군으로부터 환수해야 북한과堂堂하게 군축협상을 비롯한 군사 대화에 임할 수 있다. 이번 서해안 남북 해군의 교전사태에서 남한 해군은 북한 해군에 대해 그 질적 우위를 충분히 실증해 보였다. 이제 냉전 시대에 되풀이해 오던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군사력 열세 주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적정 군사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한 체제도 계속 발전해 가지 않으면, 대북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통일 과정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은 발휘할 수 없다. 남한 체제 내부에 영세민이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이 점에서 남한의 복지 체제를 충실히 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통일 과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음으로 내부 변화란 측면에서 북한은 남한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적어도 중국 정도의 시장경제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나 대화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이 남한과의 전면 화해에 나선다는 것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관계가 최소한 현재 중국-대만 간 관계 수준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북한 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힘든 일이다. 남한은 북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 체제는 이미 변화를 개시하고 있다. 여기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현법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식량난 이후 광범한 농민시장, 도시시장이 형성되어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의 상당 부분은 이제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식량난으로 상황에 쫓기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조정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수혈 없이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제 체제 조치가 해제되고,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북일 수교에 따른 배상자금, 남한의 경제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적인 마살

플랜이 준비되어야 한다. 북한 내부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국제적인 경제지원이 결합될 때, 본격적인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일본, 미국, EU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 남한측이 협력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북한 내 군부의 역할 증대가 향후 체제 변화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북한 체제 내부의 위기관리란 측면에서 군의 역할은 전면에 등장해 있다. 최고지도자 김정일이 국방위 원장직으로 통치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상징한다. 다만 북한 체제 내 군부가 체제 생존의 기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자세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극도의 자원 결핍 상황에서 자원 배분 상 우선 순위에서 군사부문이 앞설 수 있다는 점은 외부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위협을 평가할 경우, 북한 체제 내에서 군사부문은 다른 경제 부문을 압도할 만큼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미 연합 전력과의 경쟁에서는 압도적인 열세에 처해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 북한 체제가 직면한 군사적 딜레마는 동시에 이와 대처하고 있는 남한 및 미국을 포함한 외부세계에도 똑같이 작용하게 된다. 또한 다른 부문에 비해 군사적 부문의 비중이 비대해 있다는 점은 북한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남한에도 해당된다.

한반도 군축 문제는 남북한 각각의 군사적 비대화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상황이다. 북한 체제의 군사적 열세가 가속될 것이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 뿐 아니라 남한 및 미국도 포함된 군축 협상에 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를 위해 먼저 남한 및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해 '일방적 안보'가 아닌 '공통의 안보' 정신에 입각하여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국제적 조건

북한은 70년대에는 미국무장관 키신저가 제안한 '한반도 교차승인'에 대해 영구분단 음모라 하여 격렬히 거부한 바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권 변화로 한소, 한중 수교가 실현됨에 따라 북한은 91년도 유엔에 남한과 동시 가입하는 길을 택하여 한반도 교차승인을 현실로 받아들일게 되었다. 유엔 가입 당시만 해도 북한은 북미, 북일 수교는 자연히 실현될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현실의 사태 전개는 그렇지 못하였으며, 한소, 한중 수교에 상응하는 북미, 북일 수교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북한측은 97년도 열린 4자회담 예비회담에서 남북한 대화를 요구하는 남한측 주장에 대해 미, 일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대외 관계에서 균형이 이루어진 이후나 남북대화는 실현될 수 있다는 이른바 '균형론'을 제기하였다. 이 논리는 '북한식 교차승인론'에 다름 아니다. 과거 미국측이 주장하고 북한측이 거부했던 교차승인론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남북대화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북한 입장이 옳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그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구 2천만이 넘고 50년 이상 유지된 국가로서 북한도 당연히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 북일 수교 이전에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거 남한 측의 '조화와 병행의 원칙' 주장을 전형적인 흡수통일 논리로 간주하는 듯하다. 사실 탈냉전 시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나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심한 피해의식을 느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대화만을 요구할 때 이를 한미일의 포위 하에 남한에 북한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강박관념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국제적 조건은 무엇보다도 북미 관계,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이제 북미, 북일 관계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와의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병렬적인 대외 관계라기보다는 북한의 대외적 운신 폭

을 좌우하는 하나의 구조적 여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과거 김영삼 정부와는 달리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가 남북 대화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 일본에 대해 대북 관계 개선을 권하고 있다. 한반도 교차승인의 완결이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국제적인 조건이라는 데 미, 일, 중, 러, 남북한이 견해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중국, 러시아는 이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남한 정부의 입장 전환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단기간에 역지로 미국, 일본이 관계 개선을 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 내에는 의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미사일 문제 해결 없이 북미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 또한 일본 내에도 '일본인 납치사건'이 증폭되면서 반복한 정서가 심해진데다가 새로이 '북한 미사일 쇼크'가 겹치면서 대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늘어났다. 북한이란 상종할 필요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라'라는 인식이 미, 일 내 일부에는 자리잡고 있다. 일부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인식을 조장하는 면도 있으나, 엄연한 현실의 벽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다.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 일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는 일이다. 남한측이 제시한,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는 대신 미, 일이 대북 수교에 나서도록 한다는 '포괄적 타결 방안'은 남한 나름대로 노력을 보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타결방안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 제안이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식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미, 일이 핵, 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북한의 의도에 대해 품는 의심보다 훨씬 뿌리 깊게 북한은 미, 일의 의도를 불신하고 있다. 남한측이 해야 할 역할은, 문제를 어디까지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북한측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또한 타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미국, 일본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확대하도록 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약간 다루었지만, 국제적 조건으로서 '한미일 공조체계'의 성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히 논하고 싶다. 냉전 시대 이래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 미, 일의 우호 관계에서 볼 때,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 미, 일이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한, 미, 일 사이에는 대북 정책에서 일치하는 점도 있고, 또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주권국가의 이해관계란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다.

다만 한, 미, 일 공조와 관련하여 일본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선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외교적 조정이란 한계를 넘어 한, 미, 일 '3각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남북한 관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반도 주변정세는 이른바 '신냉전'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동맹이 NATO화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는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남북한 간 긴장도 냉전 시대 못지 않게 고조될 우려가 있다.

이미 진전되고 있는 '한일 안보협력'은 상호 군사적 투명성 제고, 군사정보 교환, 인적 교류 등 신뢰구축조치(CBM) 선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 한일간에 쌓여 온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를 감안할 때, 이러한 군사적 신뢰조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한미 군사동맹도 상당 기간 존속된다 해도 한국의 독자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여전히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는 주권국가관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여 한국군이 미군에 대해 그 위상을 높일 때, 북한측과도 군축협상을 비롯한 군사대화에서 당당하게 대좌할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민족적 독자성을 재고해 간다는 것은 그 군사주권을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려는 북한을 남북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은 이러한 방향에서 기를 수밖에 없다.

한편 이 글에서는 길게 상론할 여유가 없으나,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외교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도 남북한 관계 진전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도 북한의 고립감을 완화시켜, 북한이 남북 대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특히 중국과 북한 간 정상외교 회복은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토대로 발전할 수 있다.

6. 남북한 관계와 북미, 북일 관계—서해안 사태와 관련하여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 여부와 관련하여 이것이 실현되면 북한은 여기서 생기는 실리만을 추구하고 남북한 관계는 배제할 것이라는 의심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내에도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 사실 체제 역량에서 남한에 압도당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이 체제 생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남북한 관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보다 남북한 관계가 더더질 수 있는 부담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남북한 관계는 독자적 차원에서 그 자체로서 풀려 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어차피 급격한 남북한의 관계 개선이나 전면적인 화해란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을 의미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남한이 흡수통일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미, 북일 관계 개선도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 나가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수교에 따르는 배상자금이야말로 외부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융원이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한일 관계에서 볼 때, 북일 수교가 남한을 배제한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로만 진행될 수는 없는 시대이다. 한국은 이제 상호 경제적 연계나 정치-경제 체제적 유사성을 토대로 시민사회간의 성숙된 단계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북일 수교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남북한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중 수교를 단행함으로써 오히려 남북한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고가 된다.

최근 비료 제공을 위한 베이징 남북한 차관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서해안 '북방한계선 월선 행위'를 범함으로써 일시적이지만 남북한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간 바 있다. 북한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행동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남북한간에는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아직 한반도에는 휴전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미, 북일 관계는 여전히 적대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한측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폈다고 해도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남한이 미국에 제안한 포괄적 타결방안도 아직은 모색 중인 단계에 있다. 일단 북한이 남북 대화에 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은 북한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목표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북한이 일관해서 추진한 것이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북미 관계개선이었다.

북미 관계 개선을 일관해서 추진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북미, 북일 관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남북한 관계가 앞서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초조감이 있을 수 있다. 남한이 공식적으로는 '조화와 병행 원칙'을 포기했는 데도 현실은 남북한 관계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한 관계가 전면에서 나서면서 북미 관계를 대체해 가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이 우선된다는 의지를 남북대화가 열리기 전에 쉼기를 막아둔다는 전략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특히 시간적으로는 북한의 월선 행동이 코소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공식 매체는 주민들에게 유고 폭격 이후에 다음 표적은 북한이 될 수 있음을 거의 매일 선전해 왔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도 이른바 '작전계획 5027-98'이 북한 공격계획이라 하여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해 왔다. 북한이 미국과의 금강리 해 문제 타결을 둘러싸고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현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 접촉을 끌어내기 위한 돌발적인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있다. 그 길을 무력이 아닌 평화적 협상에서 찾으려 한다면, 이제는 총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측이 새로이 주장하기 시작한 시해안 북방한계선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색을 시작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은 남북한이 교전까지 했지만,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고 고도의 자제심을 발휘한 사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교전 사태까지 초래하지 않고도 사태를 수습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측이 월선 행위를 감행하긴 했지만, 당초부터 무력 충돌까지 의도한 것은 아닌 듯하다. 북한측이 무력 시위의 장소로 육지의 군사분계선이나 관문점이나 해상을 택한 것은, 서해안 북방한계선 자체를 문제 삼으려 한 의도도 있지만, 시위 효과는 극대화되지 무력 충돌로는 확대되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월선 행위와 교전 사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전 사태에서 북한측의 해군력 열세가 드러난 사실이 북한측에 미쳤을 충격을 면밀하게 평가해 보아야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론'을 펼치면서 이미 군사강국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경제 건설에 힘쓰면 된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해 왔다. 강성대국이란 김정일 공식 권력승계를 상징하는 공식 슬로건이다. 그 위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다. 베이징 차관급 회담에서 보인 북한측의 신경질적 태도나 금강산 관광개 역류는 북한측 입장에서 서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월선 행위 자체를 북한측이 유발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있다고 해도, 만일 거꾸로 남한 해군 함정이 격침 당하거나 피해자가 생겼다면 우리 국민 감정은 어떠했을까? 따라서 월선 행위-교전-비료 회담 차질 및 금강산 역류로 이어진 사태의 연쇄는 남북의 상호 대응 속에서 악화되어 간 것이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북한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이 정도의 자제심도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나 확대되고 있는 민간 및 경제협력, 나아가서 남한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북한의 남북대화 수락이라는 부분적이지만 개선되고 있는 남북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주한 미군은 특별한 경계태세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군사적 역할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노련하게 처신한 점이다. 미국의 군사력이 움직인 것은 남북한간에 사태가 수습되면서부터였으며, 그것도 한미군사협의회에서 한국측 요청을 받고 나서였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통일로 나아가는 데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현실은 아직 남북한 관계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는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남북한 관계가 갖는 한계도 인식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로 북미 관계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남한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해도, 남북대화가 북미, 북일 관계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용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대화 및 남북한 간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긴밀한 인내심을 요하는 장기적인 과제라는 데 국민적 합의가 얻어질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 여부를 단기적인 남북대화 성사에서 찾으려는 성급한 자세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남북대화에 연연한 나머지 북미, 북일 관계에 대한 선행 조건으로 이를 연계시키는 과거와 같은 자세를 청산하는 일이다. 이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깨닫는 데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기의 시간낭비로 충분하다.

물론 남북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이 갖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미국이나 일본 내부 정세를 감안할 때,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앞당

기는 데 남북대화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북한에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효과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 남한이 북미, 북일 관계가 남북한 관계보다 앞서가는 것을 저지하려 했듯이, 이번에는 거꾸로 미국, 일본 편에서 남북대화가 북미, 북일 관계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경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미사일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미, 일의 대북 이해관계에 남북한 관계를 종속시키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앞당기는 데 남한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독자 외교의 공간을 확대해 가는 것이 그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국보법 폐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백승헌 변호사
민변 국보법 연구회 간

1. 지금까지의 운동

- 1) 국보철 범부본의 경험
- 2)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 3) 민중운동탄압 대책위
- 4) 민가협 등의 활동
- 5) 국제캠페인팀

2.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가. 운동외적인 이유

- 1) 냉전질서의 유지 - 레드콤플렉스
- 2) 권위주의 체제 - 개선이 아니라, 계속되는 탄압
- 국보법의 유용성이 계속됨
- 3) 정치권의 이슈화 회피
- 4) 사법부의 보수성
- 5) 매스컴의 회피
- 6) 일반인의 주요 관심사항에서 벗어나 있었다.

나. 운동내적인 이유 - 의제설정권의 부재

- 1) 국가보안법 사업이 단발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 광범위한 연대와 아울러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하였다.

- 2) 국가보안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가 없고, 전문적이고 상근하는 실무역량이 배치되지 못하였다.
- 3) 선연적 운동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략적 사고가 부재하였다.
- 4)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교조적으로 흘러 단계적 주장이나 중간적 주장이 설 자리가 없어, 중간단체의 참여가 없었다.
- 5) 피해자 운동 측면이 대중성을 가로막고 오히려 폐지운동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가져 왔다.
- 6) 폐지운동의 구체적 방안도 매우 상투적이다. - 공청회, 심포지움 등
- 7) 연구자, 실무자들을 운동역량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적었다.
- 8) 연구자측의 노력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 9) 국제기구의 활용이나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매우 미흡하였다.
- 10) 세정적 안정성도 결여된 상태

3. 1998년 이후의 상황변화

가. 운동외적인 여건

- 1) 신정부의 출범 - 공약
- 2) 국제연합 인권위의 결정
- 3) 햇볕정책과 북의 제한적 개방
- 4) 하향식 개정 검토 지시

- 1) 보수화 - 공동정권의 한계
- 2) 정쟁의 항상화로 인한 의제의 불안정성
- 3) 검찰 등 공안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지
- 4) 집권 정당 구성원들의 의지 박약
- 5) 사법부, 언론의 무변화

나. 운동내적인 여건 변화

- 1년이상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의 한계 노출

4. 현재 상황은

가. 국민회의안

나. 법무부 검토안

5. 쟁점은

가. 연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나. 국보개정(일부 폐지)인가, 전면 폐지인가

6. 무엇을 할 것인가

가. 구체적인 사업

나. 제안

- 하반기 집중사업으로 인권, 재야 등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집중
- 전략단위의 형성
- 조직적으로서의 연대가 아닌 활동상의 연대
- 폐사론과 개정론의 공존이 가능한 운동
- 정치권, 언론 등 로비
- 국제적 압력수단
- 아이디어의 집중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워크숍

◎주제 1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기간 사업평가

- 발제 : 김경호(천주교연대 사무국장)

◎주제 2 : 조직체계 점검과 이후 활동방향에 대하여

- 발제 : 양준석(천주교연대 기획위원, 천정연 조직위원장)

◆ 일시 : 1999년 9월 30일

◆ 장소 : 서울 전진상 교육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기간 사업평가

김경호
천주교연대 사무국장

■사업별 평가

1. 서명운동

담당 : 조직위원회

- 1) 경과 - 각 지역별, 단체별로 서명운동 전개, 순례단 서명운동, 농성단 서명운동
- 2) 서명현황 - 광주 11,954명 청주 7,066명 안동 333명 부산 2,868명(서울 도착분) 서울 2,391명
 마산 3,197명 인천 8,098명 수원 651명 제주 512명 대전 430명 원주 2,227명
 춘천 364명
 수녀장상연합회 2,447명 순례단 7,317명 전가대협 909명
 현재 서명집계 : 58,139명(사무실로 집계된 현황임)

3)이후 - 10월 중순경 공동입법청원 예정(청원 날짜 결정 요망)

4)평가 : 서울지역 본당 조직 미비, 담당자 미조직 지역 지역별 서명결과 미취합, 10만명 목표

2. 2000인 선언

담당 : 조직위원회

1) 사업경과

- *1999년 7월 8일 2차 집행위원회 - 교계지도자 2000인 선언 사업 제안
- *1999년 7월 12일 대표자회의, 결성대회 - 교계지도자 2000인 선언 사업 결정, 공표

- *1999년 7월 23일 3차 집행위원회 - 광고일정과 광고언론 선정, 선언인 모집의 형식 결정
 관구별 2000인 선언 조직하기로 합의
- *1999년 8월 12일 4차 집행위원회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으로 명칭 변경
 선언인 모집의 형식 논의, 선언마감 일자 - 8월 21일
- *1999년 8월 21일 2000인 선언 마감
- *1999년 8월 23일 광고대상 신문에 광고문 발송
- *1999년 8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발표 및 기자회견(교정사목)

2) 광고

한겨레신문 - 8월 26일자 형식 : 하단 5단 통광고

평화신문 - 8월 29일자 형식 : 전면광고, 가톨릭신문 - 8월 29일자 형식 : 하단 5단 통광고

3) 광고비용(총계 : 588만원)

한겨레신문 : 250만원 평화신문 : 250만원 가톨릭신문 : 88만원

4) 선언인 집계

사제단 : 60명 인권위 : 60명 천정연(우신연, 농민회 포함) : 280명 인천교구 : 609명(광고개재62명) 원주교구 : 71명 부산교구 : 255명 청주교구 : 119명 안동교구 : 119명
 광주대교구 : 642명 전주교구 : 40명 수녀장상연합회 : 241명
 총계 성직자 (342) 수도자(493) 평신도(1170)
 선언자 총계 성직자 - 375명 수도자 - 493명 평신도 - 1191명
 선언자 총계와의오차 : 지도위원, 개별참가자

5)평가 : 선언자 중 광고에 누락된 명단, 늦게 도착한 명단 처리 여부

6)재정보고 : 재정보고서 참조

3. 전국순회기도회

담당 : 사업위원회

1)일정 : 1999년 8월 16일 - 9월 12일(28일간)

총구간 : 4,740KM(일일 169km)

연참석인원 - 중앙순례단 156명(일일 6명) 지역결합 562명(일일20명)

순례성당(기도회, 미사 개최) - 33개 성당 순례성지 - 10곳 거리선전전 - 20군데

참가성직자 - 77명, 연대단체 - 36개 단체 장기수의집 방문 - 7곳

2)순례코스

서울-부평-인천-수원-안성-대소-광혜원-청주-대전-논산-강경-용안-함열-여산-천호-신태인-부안-정읍-익산-전주

군산-수류-광주-목포-부산-마산-창원-밀양-화원-대구-상주-안동-제천-원주-춘천-서울

전주부터는 자선거순례

서명현황 - 7,173명

- 3)평가 - 순례단 구성의 문제, 역할분담의 문제, 순례의 형식, 순례의 성과
- 4)재정보고 - 사무국 지출, 순례단 자체 예산 조달(별첨)

4. 심포지엄

담당 : 기획위원회

- 1)경과 : 일시 : 9월 15일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발제자-이장희, 최병모, 성영
- 2)현황보고 : 1시-국회앞 미사 후 심포지엄-250여명 참석, 자료집 배포 문제, 발제자 선정의 문제
- 3)자료집 - 1차 제작 : 300부 당일소요 2차제작 : 500부 - 350부 소요
- 4)평가 - 대중적 참가 성과, 연대기구 구성 제안, 폐지의 당위성 역설, 우리만의 토론회

5. 단식농성

담당 : 농성집행단

- 1)경과 : 9월 7일 사제단 단식 돌입, 9월 10일 단체별 지지단식 시작
매일8시 미사, 단식소식지, 하루소식 발행, 시국기도회 개최, 연속광고 게재
- 2)현황 : 10월 3일 단식 풀 예정, 30일 농성장 철수, 국보법 폐지 연대회의와의 관계설정
- 3)평가 : 폐지운동의 구심점 마련, 집행체제 문제 대두

6. 질의서

담당 : 기획위원회

- 1)질의서 문안 - 농성집행단에서 작성(전문 별첨)
- 2)현황보고 -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 현재 13명 응답(존속4, 폐지5, 기타4)
- 3)이후 미답변자에 대한 대응은?
- 4)평가 - 기획위원회에서 농성집행단으로 담당 변경 과정

7. 홍보물 제작

리플렛, 엽서, 유인물 제작 (각 50,000부, 이후 8,000부 추가)
재정(재정보고서 참조)

■위원회별 평가

- 1)각 위원회 구성의 배경 - 책임있는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기획, 사업, 조직으로 구분
- 2)위원회 회의보고 - 기획위 회의 : 5차 사업위 회의 : 4차 조직위 회의 : 2차
- 3)위원회 체제의 평가 - 각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평가
- 4)위원회별 연계성의 문제

■재정보고

- 1)이후 지출예정액 : 연대회의 분담금 - 30만원 평화신문 광고비 미납액 - 100만원
- 2)이후 수입예정액 : 단체분담금, 자료분담금, 2000인선언 분담금
- 3)재정안 마련 - 2주제에서 논의

◎질의 및 응답, 평가

- 1)각 사업에 대하여(서명운동, 2000인 선언, 순회기도회, 심포지엄, 단식농성, 질의서, 홍보물제작)
- 2)위원회별 체제에 대하여
- 3)재정에 대하여
- 4)기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향후 활동방향(안)

양준석
천주교연대 기획위원, 천정연 조직위

1. 진행경과보고 (9월, 단식기도와 연대를 중심으로)

- 9월 7일(화) : 사제단 기자회견 (12개 교구 43명 사제 참여)
 -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폐지 삭발, 무기한 단식기도 돌입
 - 성명서 발표
 - 명동성당 성모동산에서 매일 오후 8시미사
 - 단식기도 하루소식 매일 제작, 재단체 등에 발송
 - 인터넷등에 게재
- 9월 8일(수) : 명동성당 돌머리에 동조 텐트 설치
 - 한겨레신문 매일광고 조직
- 9월 9일(목) : 단식기도 소식 1호 발행
- 9월 10일(금) : 노동사목, 예수살이 동조단식
 - 한겨레신문 광고조직
- 9월 12일(일) : 국가보안법 폐지 자전거 전국 순례단 명동도착
 - 한겨레신문 광고조직
- 9월 13일(월) : 국가보안법 폐지 1차 시국기도회
 - 오후 7시, 국가보안법 폐지 자전거 순례단 보고대회
 - 동조삭발 (노사목, 예수살이, 천정연, 인천연대)
 - 오후 8시, 시국미사 (천주교연대, 사제단)
 - 성명서 2차 발표

- 단식기도 소식 2호 발행
- 9월 14일(화) : 마산교구 동조 단식 (마산교구청)
 - 사제 16명 (9/14 - 9/24)
 - 마산교구 매주 월요일 시국기도회
 - 9/27 시민단체와 연대기구 결성식 (50개 단체)
- 9월 15일(수)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앞 거리미사
 - 오후 1시, 국회앞 미사 (사제단 신부 집전)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
 -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 (이장희교수, 최병모변호사, 성 염교수 발제)
 - 국가보안법 폐지 전주교구 동조단식 (전주교구청)
 - 매주 목요일 가두 캠페인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안동교구 동조단식
- 9월 17일(금) : 천주교 여성공동체 동조단식
- 9월 18일(토) : 단식기도소식 3호 발간
- 9월 20일(월)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행사 (오후 7시)
- 9월 21일(화)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내외신 기자회견
 - NHK, LA 타임즈, YTN, 한겨레등
- 9월 22일(수) : 천정연 제단체 동조단식
- 9월 27일(월) : 국가보안법 폐지 범 종교인대회
 - 오후 7시, 명동성당
- 9월 28일(화) : 국가보안법 폐지 인천교구 동조단식 예정
(가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 오전 9시, 명동성당
 - 1) 연대기구 추진건, 2) 10월 2일 범국민행동의 날 공동 추진건
 - 3) 공동청원 추진건, 4) 공동행동 추진건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각층 대표자 공동기자 회견
 - 오전 11시, 명동성당
- 9월 30일(목) : 국가보안법 폐지를 천주교연대 Workshop
 - 오후 2시, 명동
 - 1) 지난사업 평가, 2) 이후 사업 계획건, 3) 조직개편안 등
- 10월 2일(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1차 범국민 행동의 날
 - 오후 2시, 대학로

2. 현재까지 경과에 대한 고민지점

- 사제단의 단식기도운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안 마련 시급

(사제단은 10/4-5 25주년 행사추진문제, 천정연 10/31일 한마당추진문제.

지역 정평위 전체일정 공유를 위한 사업안 시급)

- 천주교 내 연대운동이 이후 일정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 서울지역의 경우 사업진행과 더불어 홍보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것을 요청됨.
- 특히 교회 고위층에 대한 탄원과 호소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범 교회적 사업으로 이어갈 것에 대한 고민과 사업 필요.
- 이후 국가보안법 관련기구의 연대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지도력과 집행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필요.

3. 10 - 12월 사업계획안

1) 명동 단식기도

- * 현재 10월 3일까지 매일미사 계획 진행예정
- * 단식사제들의 신체적 조건과 제 단체들의 현황으로 볼 때 단식기도 지속이 어려움 봉착
- 10월 3일 이후에는 연대단식기도는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농성으로 이어짐

2) 매주 월요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선전 및 미사 (각 교구별로)

■선전

- * 시간 : 매주 월요일 6시
- * 장소 : 주요 도시 도심지에서 동시다발로 조직
- * 조직 : 가능한 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학생, 단체)
- * 내용 : 범국민 행동요령과 선전전을 중심으로
 - ① 국가보안법 피해자 보고사례와 의견
 - ② 국가보안법 폐지에 각계각층의 입장 다양한 형식을 통해 (종교인,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문예인, 법조인, 시민, 보건의료인, 지역등)
 - ③ 문화행사와 결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백림사건과 조작사건등 이미 보도된 사건에 대한 VTR)

■미사

- * 취지 : 사제단의 단식기도를 이어가고 확산하는 방향에서 추진
자발적인 신자층을 조직화할 필요성에서 추진
-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 * 장소 : 각 교구별로 상징성 있는 곳으로
서울(명동성당), 인천, 수원, 춘천, 원주, 청주, 대전, 전주, 안동, 대구, 부산, 마산, 광주, 제주
- * 내용 : 문화행사와 교육을 함께 담은 형식으로
- * 준비 : 사제단, 수녀 장상 연합회, 정평위, 천정연등

- 제 단체들이 릴레이식으로 인원조각과 진행

3) 주교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관련 탄원서 제작

- * 시기 : 10월 11일부터 (확인요)
- * 장소 : CCK
- * 내용 :
 - 하느님 시선으로 세상바라보기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신앙상의 근거
 - 국가보안법 폐지를 교회공식입장으로 요청
- * 방법 : 서울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 공문발송
 - 당일 시위조직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교구 순회강연회 조직

- * 취지 : 교회내 신자층의 여론조직화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교양
- * 주제 : 대화년과 인권
- * 시기 : 10월 중순이후 12월 초순까지
- * 장소 : 각 교구별 중심 본당에서 조직
- * 내용 : 2-3강을 중심으로
 - ① 회년과 교회사
(분단의 역사적인 측면과 교회사적인 측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 ② 영화로 보는 인권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 국내사건이나 외국자료중에서)
 - ③ 회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2천대화년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참여에 대해)
- * 강사 : 신자층에서, 이후 공감되는 문인이나 종교인을 중심으로
- * 준비 : 10월 중순까지 대상본당 확정

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청원과 정치권 압박

- * 시기 : 10월 중순부터
- * 장소 : 청와대, 중앙당사와 국회의원 사무실
- * 방법 :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회의와 공동보조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 개인의견과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지역과 서울에서 분담해서 진행
 - 중앙당사에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용지와 각계각층의 입장을 전달하고 입법 청원 노력요청
 - 가능하면 당사에서 농성결함 (10월 20일 이후), 특히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공개 압박